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계연도	예산	결산	추경
2024	○		

공통요구자료	Ⅱ-1
--------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주택도시기금·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024. 1.

국 토 교 통 부

목 차

I. 주택도시기금	1
2. 수 입	3
(1) 정부출자수입(주택)	3
(2) 기타민간이자수입(주택)	4
(3) 기타재산이자수입	5
(4) 법정부담금	6
(5) 기타경상이전수입	7
(6) 기타잡수입(주택)	8
(7)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주택)	9
(8) 정부출자주식매각대(주택)	10
(9) 국공채발행수입	11
(1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주택)	13
(1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주택)	14
(12) 일반회계전입금	15
(13) 기금전입금	16
(14) 기금예탁원금회수	17
(15) 기타민간예수금	18
(16) 기금예탁이자수입	19
(17) 정부출자수입(도시)	20
(18) 기타민간이자수입(도시)	21
(19) 기타잡수입(도시)	22
(2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도시)	23
(2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도시)	24
(2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도시)	25
(23) 계정간전입금	26
3. 지 출	27
(1)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1038-401)	27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041-401)	30
(3) 이차보전 지원 (1042-401)	33
(4)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1043-301)	36
(5)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1071-798)	38
(6) 국공채이자상환 (1071-799)	41
(7) 위탁수수료(주택) (1076-600)	44
(8) 기타경비(주택) (1077-634)	47
(9)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1131-403)	50
(10) 층간소음 성능보강(1131-407)	54
(11)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1131-408)	57
(12) 분양주택(용자) (1134-401)	60
(13)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1231-401)	64
(14) 국민임대(용자) (1332-401)	69
(15) 공공임대(용자) (1333-401)	72
(16) 집주인임대주택사업 (1333-402)	76
(17) 민간임대(용자) (1333-404)	79
(18) 행복주택(용자) (1335-401)	82
(19) 다가구매입임대(용자) (1336-401)	86
(20) 전세임대(용자) (1337-401)	90
(21) 통합공공임대(용자) (1338-406)	94
(2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1440-402)	97
(23) 전세·매입임대경상보조 (1440-403)	101
(24) 국민임대출자 (1440-404)	105
(25) 영구임대출자 (1440-407)	108
(26) 행복주택출자 (1440-408)	111
(27) 임대주택리츠출자 (1440-409)	114
(28) 통합공공임대출자 (1440-411)	118
(29)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1440-412)	121
(30) 주택도시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 반환금(8910-891)	125
(31) 사학진흥기금 예탁 (9002-900)	128
(3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9003-910)	131
(33) 공공자금관리기금(용자계정) 예수원금상환(9110-911)	134
(34) 공공자금관리기금(용자계정) 예수이자상환(9201-921)	137
(35) 도시계정 전출(9310-999)	140
(36) 통화금융기관예치(주택) (9701-971)	143

(37) 비통화금융기관예치(주택) (9701-972)	146
(38) 기타여유자금운용(주택) (9701-973)	149
(39)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9850-980)	151
(40) 국공채원금상환 (9860-980)	154
(41) 도시재생사업지원 (1510-992)	157
(42) 도시재생지원(융자) (1510-997)	161
(4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20-301)	165
(44) 이차보전지원 (1520-302)	169
(45)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1520-992)	173
(46) 도시재생씨앗융자(1520-994)	176
(47) 위탁수수료(도시)(1530-600)	180
(48) 기타경비(도시)(1540-634)	183
(49) 통화금융기관예치금(도시)(9701-971)	186
(5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도시)(9701-972)	189

II.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93

2. 수 입 195

(1) 기타재산이자수입	195
(2) 법정부담금	197
(3) 기타경상이전수입	198
(4) 기금예탁원금회수	200
(5) 기금예탁이자수입	202
(6)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03
(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04

3. 지 출 205

(1) 의무보험전산망 (4641-300)	205
(2) 피해자지원 (4641-301)	209
(3) 정부보장사업 (4641-302)	213
(4) 생활지원 및 학자금 (융자) (4641-303)	216
(5) 국립교통재활병원 (4641-304)	219
(6)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4641-305)	223
(7) 기금운영비(4651-306)	227

(8)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9003-910)	230
(9) 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1)	233
(1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2)	236

주택도시기금

2. 수 입

(1) 정부출자수입(주택)	
52-521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 획 액		2024년		증 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정부출자수입	573,426	620,786	620,786	670,839	670,839	50,053	8.1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10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0. 주택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나. 수입 개요

- 주택도시기금의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익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234,687	234,687	234,687	302,801	302,801	129.0	100.0	-	-
'21	416,751	416,751	416,751	428,654	428,654	102.9	100.0	-	-
'22	459,049	459,049	459,049	566,563	566,563	123.4	100.0	-	-
'23	620,786	620,786	620,786	196,810	196,810	31.7	100.0	-	-
'24	670,839	-	-	-	-	-	-	-	-

(2) 기타민간이자수입(주택)
54-544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민간이자수입	2,715,424	3,273,113	3,273,113	3,597,673	3,597,673	324,560	9.9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주택건설, 주택구입·전세 자금 등 주택 사업자 또는 수요자에게 지원된 대출금 등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3,075,152	3,075,152	3,075,152	3,124,538	2,616,601	85.1	83.7	438,675	69,262
'21	3,251,407	3,251,407	3,251,407	3,339,774	2,886,110	88.8	86.4	421,364	32,300
'22	3,306,194	3,306,194	3,306,194	1,538,540	1,538,540	46.5	100.0	-	-
'23	3,273,113	3,273,113	3,273,113	2,884,228	2,884,228	88.1	100.0	-	-
'24	3,597,673	-	-	-	-	-	-	-	-

(3)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55,380	140,652	140,652	51,553	51,553	△89,099	△0.6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발생한 수익
 - 예치금 이자, 유가증권 처분익, 공유형모기지 정산수익 등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	-	-	-	-	-	-	-	-
'21	-	-	-	-	-	-	-	-	-
'22	35,460	35,460	35,460	13,096	13,096	36.9	100.0	-	-
'23	140,652	140,652	140,652	74,302	74,302	52.8	100.0	-	-
'24	51,553	-	-	-	-	-	-	-	-

(4) 법정부담금
59 - 59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		2024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법정부담금	72	10,000	10,000	20,000	20,000	-	-

가. 법적 근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50이,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에 100분의 30이,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100분의 50이,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0이 각각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나. 세입 개요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징수하는 법정부담금

※ 수입의 출처 : 재건축조합에 부과, 부과기준(율) :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적용,
납기일정 : 부과일로부터(준공부터 5월이내) 6월이내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장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	2,000	2,000	2,000	530	530	26.5	100.0	-	-
'21	5,000	5,000	5,000	116	116	2.3	100.0	-	-
'22	10,000	10,000	10,000	72	72	0.7	100.0	-	-
'23	10,000	10,000	10,000	50	50	0.5	100.0	-	-
'24	20000	20000							

(5)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27,523	81,819	81,819	81,819	81,819	-	-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2항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입 개요

- 전년도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다가구매입임대출자, 전세임대경상보조 등) 정산에 따른 반납수입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80,326	80,326	80,326	31,599	31,599	39.3	100.0	-	-
'21	88,930	88,930	88,930	33,126	33,126	37.3	100.0	-	-
'22	81,819	81,819	81,819	27,523	27,523	33.6	100.0	-	-
'23	81,819	81,819	81,819	11,274	11,274	13.8	100.0	-	-
'24	81,819	-	-	-	-	-	-	-	-

(6) 기타잡수입(주택)	
69-691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잡수입	32,731	51,826	51,826	51,826	51,826	-	-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예산과목으로 명시된 수입을 제외한 공탁금, 소멸시효완성채권, 특수채권이자수입 등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67,780	67,780	67,780	31,018	31,018	45.8	100.0	-	-
'21	67,780	67,780	67,780	16,121	16,121	23.8	100.0	-	-
'22	51,826	51,826	51,826	32,731	32,731	63.2	100.0	-	-
'23	51,826	51,826	51,826	57,112	57,112	110.2	100.0	-	-
'24	51,826	-	-	-	-	-	-	-	-

(7)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주택)	
75-754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1,107,110	17,382,570	17,382,570	18,427,277	18,427,277	1,044,707	0.1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주택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 사업자나 수요자에게 대출 후 약정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조성되는 자금
- 상환방법
 - 정기상환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
 - 일시상환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일에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12,455,257	12,455,257	12,455,257	15,329,084	14,743,349	118.4	96.2	527,339	58,396
'21	13,540,459	13,540,459	13,540,459	14,341,487	13,864,841	102.4	96.7	452,960	23,686
'22	16,002,245	16,002,245	16,002,245	7,319,914	7,319,914	45.7	100.0	-	-
'23	17,382,570	17,382,570	17,382,570	11,911,986	11,911,986	68.5	100.0	-	-
'24	18,427,277	-	-	-	-	-	-	-	-

(8) 정부출자주식매각대(주택)

78-781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정부출자주식매각대	37,826	-	-	22,900	22,900	-	-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예산과목으로 명시된 수입을 제외한 공탁금, 소멸시효완성채권, 특수채권이자수입 등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	-	-	-	-	-	-	-	-
'21	-	-	-	-	-	-	-	-	-
'22	-	-	-	37,826	37,826	-	100.0	-	-
'23	-	-	-	98,335	98,335	-	100.0	-	-
'24	22,900	-	-	-	-	-	-	-	-

(9) 국공채발행수입
81-811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국공채발행수입	14,445,467	16,000,000	16,000,000	16,000,000	16,000,000	-	-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

나. 수입 개요

-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 제1종 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에게 발행하는 채권
 - 제2종 채권은 공공택지내의 85㎡초과 분양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와 현시세와의 차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분양자에게 발행하는 채권

구 분	이 율	기 간	내 용
제1종국민주택채권	연 1.30%	5년	인·허가, 등기, 등록시 첨가발행
제2종국민주택채권	연 0% (99.715이전발행분 3.0%)	10년	공공택지내의 85㎡ 초과 분양 아파트에 대해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8,704,588	18,704,588	124.7	100.0	-	-
'21	15,000,000	15,000,000	15,000,000	18,804,527	18,804,527	125.4	100.0	-	-
'22	18,000,000	18,000,000	18,000,000	14,445,467	14,445,467	80.3	100.0	-	-
'23	16,000,000	16,000,000	16,000,000	13,052,012	13,052,012	81.6	100.0	-	-
'24	16,000,000	-	-	-	-	-	-	-	-

(1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주택)

85-852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323,881	1,056,559	1,056,559	323,881	323,881	△732,678	△0.7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조성한 자금 중 융자사업, 차입금 상환 등에 운용하고 남은 잉여자금으로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사업비 지출을 위해 회수
-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자금(MMDA, 각 수탁기관 예치금)으로 구성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2,150,000	2,150,000	2,150,000	881,747	881,747	41.0	100.0	-	-
'21	1,234,080	1,234,080	1,234,080	1,090,342	1,090,342	88.4	100.0	-	-
'22	1,012,994	1,012,994	1,012,994	323,881	323,881	32.0	100.0	-	-
'23	1,056,559	1,056,559	1,056,559	147,607	147,607	14.0	100.0	-	-
'24	323,881	-	-	-	-	-	-	-	-

(11)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주택)

85-853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44,345,042 (21,545,042)	24,093,280	24,093,280	26,521,067	24,209,328	116,048	0.0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조성한 자금 중 융자사업, 차입금 상환 등에 운용하고 남은 잉여자금으로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사업비 지출을 위해 회수
-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자금(MMF, 전담운용기관, 연기금투자펀)으로 구성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21,111,004	21,111,004	21,111,004	28,631,672 (3,371,672)	28,631,672 (3,371,672)	135.6 (16.0)	100.0 (100.0)	-	-
'21	15,327,196	15,327,196	15,327,196	38,551,789 (5,751,789)	38,551,789 (5,751,789)	251.5 (37.5)	100.0 (100.0)	-	-
'22	17,922,650	17,922,650	17,922,650	44,345,042 (21,545,042)	44,345,042 (21,545,042)	247.4 (120.2)	100.0	-	-
'23	24,093,280	24,093,280	24,093,280	29,807,100	29,807,100	123.7	100.0	-	-
'24	24,209,328	-	-	-	-	-	-	-	-

(12) 일반회계 전입금
91-911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계획		2023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일반회계 전입금	4,278,137	4,558,870	4,558,870	3,305,982	3,305,982	△1,252,888	△27.5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4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나. 수입 개요

- 장기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자체에 건설비용의 일부를 출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입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2,424,024	2,424,024	2,424,024	2,424,024	2,424,024	100.0	100.0	-	-
'21	3,593,621	3,593,621	3,593,621	3,593,621	3,593,621	100.0	100.0	-	-
'22	4,278,137	4,278,137	4,278,137	4,278,137	4,278,137	100.0	100.0	-	-
'23	4,558,870	4,558,870	4,558,870	3,039,248	3,039,248	66.7	100.0	-	-
'24	3,305,982		-	-	-	-	-	-	-

(13) 기금전입금
91-913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금전입금	550,397	450,040	450,040	468,180	450,040	-	-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1호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나. 수입 개요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총수익금의 일정액을 임대주택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배분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550,361	550,361	550,361	550,361	550,361	100.0	100.0	-	-
'21	550,361	550,361	550,361	550,361	550,361	100.0	100.0	-	-
'22	550,397	550,397	550,397	550,397	550,397	100.0	100.0	-	-
'23	450,040	450,040	450,040	450,040	450,040	100.0	100.0	-	-
'24	450,040		-	-	-	-	-	-	-

(14)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금예탁원금회수	9,402,688	14,591,337	14,591,337	14,367,539	14,367,539	△223,798	△0.0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주택도시기금이 타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사학진흥기금 등)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회수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8,434,979	8,434,979	8,434,979	8,434,979	8,434,979	100.0	100.0	-	-
'21	11,224,741	11,467,709	11,467,709	11,467,709	11,467,709	100.0	100.0	-	-
'22	9,402,666	9,402,666	9,402,666	9,402,688	9,402,688	100.0	100.0	-	-
'23	14,591,337	14,591,337	14,591,337	14,591,336	14,591,336	100.0	100.0	-	-
'24	14,367,539	-	-	-	-	-	-	-	-

(15) 기타민간예수금	
94-946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민간예수금	18,313,876	21,505,300	21,505,300	21,750,000	21,750,000	244,700	0.0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주택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나. 수입 개요

- 무주택 세대주가 월저축한도액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한 날짜에 납입하는 청약저축 및 종합저축 납부금 수입액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17,729,600	17,729,600	17,729,600	21,170,079	21,170,079	119.4	100.0	-	-
'21	16,977,000	16,977,000	16,977,000	23,138,357	23,138,357	136.3	100.0	-	-
'22	20,740,900	20,740,900	20,740,900	11,295,307	11,295,307	54.5	100.0	-	-
'23	21,505,300	21,505,300	21,505,300	14,610,183	14,610,183	67.9	100.0	-	-
'24	21,750,000		-	-	-	-	-	-	-

(16)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금예탁이자수입	229,602	645,773	645,773	510,431	515,531	△130,242	△20.2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주택도시기금이 타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사학진흥기금 등)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 수입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152,087	166,156	166,156	117,147	117,147	70.5	100.0	-	-
'21	241,532	258,212	258,212	132,383	132,383	51.3	100.0	-	-
'22	280,043	324,946	324,946	229,602	229,602	70.7	100.0	-	-
'23	645,773	645,773	645,773	519,587	519,587	80.5	100.0	-	-
'24	515,531	-	-	-	-	-	-	-	-

(17) 정부출자수입(도시)
52-521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정부출자수입 (도시)	831	-	-	9,000	9,000	9,000	순증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2항제6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도시계정에서 출자한 기관의 배당수익

나. 수입 개요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된 기금 출자금에 대한 배당 수입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810	810	810	2,035	2,035	251.2	100.0	-	-
'21	650	650	650	1,786	1,786	274.8	100.0	-	-
'22	-	-	-	831	831	-	100.0	-	-
'23	-	-	-	4,456	4,456	-	100.0	-	-
'24	9,000								

(18) 기타민간이자수입(도시)

54 - 544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민간이자수입	31,797	92,432	92,432	78,675	78,675	△13,757	△14.9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2항제5호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도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된 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 도시재생지원(융자), 도시재생씨앗(융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융자),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19,049	19,049	19,049	15,875	15,299	80.3	96.4	576	-
'21	39,497	39,497	39,497	23,880	22,437	56.8	93.9	1,443	-
'22	47,996	47,996	47,996	34,206	31,797	66.2	92.9	2,409	-
'23	92,432	92,432	92,432	48,022	44,698	48.4	93.1	3,324	-
'24	78,675		-	-	-	-	-	-	-

(19) 기타잡수입(도시)
69 - 691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잡수입	240	200	200	200	200	-	동일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2항제5호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도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

나. 수입 개요

- 기금 출·용자 관련 채권보전 및 소송비용 회수, 특수채권 회수 등에 따른 수입액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200	200	200	11	11	5.4	100.0	-	-
'21	200	200	200	-	-	순감	-	-	-
'22	200	200	200	240	240	119.5	100.0	-	-
'23	200	200	200	2	2	1.0	100.0	-	-
'24	200		-	-	-	-	-	-	-

(2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도시)
75 - 754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민간 융자원금회수	245,053	290,772	290,772	496,063	496,063	205,291	70.6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2항제5호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도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된 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액
- * 도시재생지원(융자), 도시재생씨앗(융자), 가로주택정비사업(융자), 자율주택정비사업(융자),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1,641	1,641	1,641	149,917	136,413	8,312.8	91.0	13,504	-
'21	-	-	-	303,341	291,831	순증	96.2	11,510	-
'22	51,014	51,014	51,014	259,602	245,053	480.4	94.4	14,549	-
'23	290,772	290,772	290,772	251,346	227,492	78.2	90.5	23,854	-
'24	496,063		-	-	-	-	-	-	-

(2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도시)

85 - 852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217	10,000	10,000	10,000	10,000	-	동일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2항제5호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도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도시재생활성화 목적으로 조성하여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전년말 잔액으로 표기

* 즉시 소요가 높은 사업대기자금을 MMDA(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일종) 계좌에 보유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10,000	10,000	10,000	13,992	13,992	139.9	100.0	-	-
'21	10,000	10,000	10,000	156	156	1.6	100.0	-	-
'22	10,000	10,000	10,000	217	217	2.2	100.0	-	-
'23	10,000	10,000	10,000	9,813	9,813	98.1	100.0	-	-
'24	10,000		-	-	-	-	-	-	-

(2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도시)

85 - 853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689,850	142,176	142,176	809,059	809,059	666,883	469.1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2항제5호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도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도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나. 수입 개요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도시재생활성화 목적으로 조성하여 비통화금융기관*에서 당해년도에 회수한 누적액으로 표기

* 현금성 자금(만기 3개월 미만)과 유동성 자금(만기 1년 미만)으로 MMF 등에 예치하여 운용하며 당해 회수한 누적액으로 표기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412,667	412,667	412,667	987,016 (257,316)	987,016 (257,316)	239.2 (62.3)	100.0 (100.0)	-	-
'21	-	-	-	1,095,843 (110,843)	1,095,843 (110,843)	-	100.0 (100.0)	-	-
'22	10,000	10,000	10,000	689,850 (311,350)	689,850 (311,350)	6,899 (3,114)	100.0 (100.0)	-	-
'23	142,176	142,176	142,176	989,283 (460,000)	989,283 (460,000)	695.8 (323.5)	100.0 (100.0)	-	-
'24	809,059		-	-	-	-	-	-	-

(23) 계정 간전입금
91 - 915

< 주택도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계정 간전입금	590,663	537,998	537,998	151,095	151,095	△386,903	△71.9

가. 법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2항제9호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나. 수입 개요

-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의 기금 출·용자 지원을 위한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여유재원을 도시계정으로 이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에 활용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507,449	457,223	457,223	457,223	457,223	100.0	100.0	-	-
'21	901,976	901,976	901,976	901,976	901,976	100.0	100.0	-	-
'22	590,663	590,663	590,663	590,663	590,663	100.0	100.0	-	-
'23	537,998	537,998	537,998	537,998	537,998	100.0	100.0	-	-
'24	151,095		-	-	-	-	-	-	-

3. 지 출

사 업 명						
(1)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1038-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7	26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401
명칭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재건축초과이익지자체배분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재건축초과 이익자본이전		주택토지실	박용선	염광은	김동욱
		주택정비과	044-201-3383	044-201-3392	044-201-3386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재건축초과이익 자본이전	61	85	85	57	57	△28	△32.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3	123	61 [55]	-	62	85	85	85	66 [0]	85	66 [0]	-	19	57
· 재건축초과이익 자본이전	123	123	61 [55]	-	62	85	85	85	66 [0]	85	66 [0]	-	19	57
○ 비목별 분류(합계)	123	123	61 [55]	-	62	85	85	85	66 [0]	85	66 [0]	-	19	57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23	123	61 [55]	-	62	85	85	85	66 [0]	85	66 [0]	-	19	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자체에 배분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4조 (징수금의 배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각각 100분의 50을 지원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06. 5 :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제도 도입
- '12. 12 :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14.12월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조합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 '14. 12 :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17.12월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조합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 '18. 1 :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도 재시행
- '19. 12 : 헌법재판소 재건축부담금제도 “합헌” 결정
- '21. 6 : '20년도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530백만원 배분
- '22. 6 : '21년도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61백만원 배분
- '23. 5 : '22년도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66백만원 배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1,100	123	85	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건축초과 이익자본이전	보조	지자체 보조	57백만원	5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사 업 명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041-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1	401
명칭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주택신보출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출연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관	전성배	정태훈	진주형
		주택기금과	044-201-3337	044-201-3339	044-201-3346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일반출연금	114,133	121,817	127,817	123,380	123,380	1,563	1.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2,565	132,565	114,133	-	18,432	121,817	127,817	127,817	126,767	127,817	126,767		1,050	123,380
·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출연	132,565	132,565	114,133	-	18,432	121,817	127,817	127,817	126,767	127,817	126,767		1,050	123,380
○ 비목별 분류(합계)	132,565	132,565	114,133	-	18,432	121,817	127,817	127,817	126,767	127,817	126,767		1,050	123,380
·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	132,565	132,565	114,133	-	18,432	121,817	127,817	127,817	126,767	127,817	126,767		1,050	123,38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2,565	132,565	114,133	-	18,432	121,817	127,817	127,817	126,767	127,817	126,767		1,050	123,380
· 일반출연금	132,565	132,565	114,133	-	18,432	121,817	127,817	127,817	126,767	127,817	126,767		1,050	123,380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	132,565	132,565	114,133	-	18,432	121,817	127,817	127,817	126,767	127,817	126,767		1,050	123,3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기능을 통한 주택자금 용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② 추진경위

- '87. 5. : '87년 5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납입
- '03. 12.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 공포
- '04. 2. : 한국금융공사법시행령 제정 공포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87~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 사업 수혜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평잔× 출연요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

사 업 명
(3) 이차보전 지원 (1042-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주택	사회복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2	401
명칭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이차보전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관	전성배	정태현	진주형
		주택기금과	044-201-3337	044-201-3339	044-201-3346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민간이전	498,184	765,578	1,009,478	1,393,641	1,395,141	629,563	82.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4,976	501,270	498,184	-	3,086	765,578	1,009,478	1,009,478	929,745	1,009,478	929,745	-	79,733	1,395,141
· 이차보전 지원	384,976	501,270	498,184	-	3,086	765,578	1,009,478	1,009,478	929,745	1,009,478	929,745	-	79,733	1,395,141
○ 비목별 분류(합계)	384,976	501,270	498,184	-	3,086	765,578	1,009,478	1,009,478	929,745	1,009,478	929,745	-	79,733	1,395,141
· 이차보전금(320-05)	384,976	501,270	498,184	-	3,086	765,578	1,009,478	1,009,478	929,745	1,009,478	929,745	-	79,733	1,395,141
○ 가능·비목별분류(합계)	384,976	501,270	498,184	-	3,086	765,578	1,009,478	1,009,478	929,745	1,009,478	929,745	-	79,733	1,395,141
· 민간이전	384,976	501,270	498,184	-	3,086	765,578	1,009,478	1,009,478	929,745	1,009,478	929,745	-	79,733	1,395,141
-이차보전금(320-05)	384,976	501,270	498,184	-	3,086	765,578	1,009,478	1,009,478	929,745	1,009,478	929,745	-	79,733	1,395,1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정건전성 도모와 재정지출 확대의 두가지 효과를 위해 기존의 직접융자방식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하여 분양주택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 이차보전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② 추진경위 : 기금의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

- '1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공공분양주택사업,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14년 디딤돌대출 주금공 취급분에 대해서도 이차보전
- '18년 디딤돌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은행재원 취급분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지원 시행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
- 사업규모(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 억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계 획
사업비	2,505	3,388	3,850	7,656	13,951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분양주택건설사업자, 주택 구입자 및 임차 희망자

사 업 명						
(4)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104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3	301
명칭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주택도시보증공사출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주택도시보증 공사 출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관	전성배	최준녕	정용욱
		주택기금과	044-201-3337	044-201-3338	044-201-3347
	사업시행주체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출자금	-	-	383,900	700,000	700,000	700,000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383,900	383,900	383,900	383,900	383,900			7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	-	-	-	-	-	383,900	383,900	383,900	383,900	383,900			700,0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383,900	383,900	383,900	383,900	383,900			700,000		
· 출자금 (460-01)	-	-	-	-	-	-	383,900	383,900	383,900	383,900	383,900			7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안정적 정책보증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자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출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2호, 국유재산법 제60조

□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기금 출자하여 HUG의 정책보증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 안정화를 지원하고 전세·임대보증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대응 사업 추진으로 정부 정책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 업 명
(5)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1071-79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1	798
명칭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이자상환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관	전성배	정태현	진주형
		주택기금과	044-201-3337	044-201-3339	044-201-3346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상환지출	1,240,969	642,300	1,107,224	684,843	684,843	42,543	6.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6,200	1,350,217	1,240,969	-	109,248	642,300	1,107,224	1,107,224	1,101,771	1,107,224	1,101,771	-	5,453	684,843
· 가·민간예수금이자상환	606,200	1,350,217	1,240,969	-	109,248	642,300	1,107,224	1,107,224	1,101,771	1,107,224	1,101,771	-	5,453	684,843
○ 비목별 분류(합계)	606,200	1,350,217	1,240,969	-	109,248	642,300	1,107,224	1,107,224	1,101,771	1,107,224	1,101,771	-	5,453	684,843
· 민간예수금이자(51009)	606,200	1,350,217	1,240,969	-	109,248	642,300	1,107,224	1,107,224	1,101,771	1,107,224	1,101,771	-	5,453	684,84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06,200	1,350,217	1,240,969	-	109,248	642,300	1,107,224	1,107,224	1,101,771	1,107,224	1,101,771	-	5,453	684,843
· 가·민간예수금이자상환	606,200	1,350,217	1,240,969	-	109,248	642,300	1,107,224	1,107,224	1,101,771	1,107,224	1,101,771	-	5,453	684,843
· 민간예수금이자(51009)	606,200	1,350,217	1,240,969	-	109,248	642,300	1,107,224	1,107,224	1,101,771	1,107,224	1,101,771	-	5,453	684,8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재원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으로부터 유입된 자금 중 청약저축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4호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이자상환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 사업 수혜자 : 청약저축 가입자

사 업 명
(6) 국공채이자상환 (1071-79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주택	사회복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1	799
명칭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이자상환	국공채이자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공채이자 상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관	전성배	정태현	진주형
		주택기금과	044-201-3337	044-201-3339	044-201-3346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상환지출	1,301,853	1,372,100	1,375,612	1,085,000	1,085,000	△ 287,100	△ 20.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 획 액 (수 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29,200	1,304,304	1,301,853	-	2,451	1,372,100	1,375,612	1,375,612	1,259,531	1,375,612	1,259,531	-	116,081	1,085,000
· 국공채이자상환	1,229,200	1,304,304	1,301,853	-	2,451	1,372,100	1,375,612	1,375,612	1,259,531	1,375,612	1,259,531	-	116,081	1,085,000
○ 비목별 분류(합계)	1,229,200	1,304,304	1,301,853	-	2,451	1,372,100	1,375,612	1,375,612	1,259,531	1,375,612	1,259,531	-	116,081	1,085,000
· 차입금이자(510-03)	1,229,200	1,304,304	1,301,853	-	2,451	1,372,100	1,375,612	1,375,612	1,259,531	1,375,612	1,259,531	-	116,081	1,085,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29,200	1,304,304	1,301,853	-	2,451	1,372,100	1,375,612	1,375,612	1,259,531	1,375,612	1,259,531	-	116,081	1,085,000
· 국공채이자상환	1,229,200	1,304,304	1,301,853	-	2,451	1,372,100	1,375,612	1,375,612	1,259,531	1,375,612	1,259,531	-	116,081	1,085,000
-차입금이자(510-03)	1,229,200	1,304,304	1,301,853	-	2,451	1,372,100	1,375,612	1,375,612	1,259,531	1,375,612	1,259,531	-	116,081	1,085,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으로부터 유입된 자금 중 채권만기
도래 등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4호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이자상환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 사업 수혜자 : 국민주택채권 매입자

사 업 명
(7) 위탁수수료(주택) (1076-6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6	600
명칭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수탁은행관리	위탁수수료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위탁수수료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관	전성배	정태현	진주형
		주택기금과	044-201-3337	044-201-3339	044-201-3346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운영비	215,318	242,222	242,222	248,790	248,790	6,568	2.7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 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8,754	238,754	215,318	-	23,436	242,222	242,222	242,222	222,540	242,222	222,540	-	19,682	248,790
· 위탁수수료	238,754	238,754	215,318	-	23,436	242,222	242,222	242,222	222,540	242,222	222,540	-	19,682	248,790
○ 비목별 분류(합계)	238,754	238,754	215,318	-	23,436	242,222	242,222	242,222	222,540	242,222	222,540	-	19,682	248,790
· 일반용역비 (210-14)	182,966	182,966	166,690	-	16,276	-	-	-	-	-	-	-	-	-
· 일반수용비 (210-01)	36,299	36,299	32,469	-	3,830	36,497	40,647	40,647	39,758	40,647	39,758	-	889	30,429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9,489	19,489	16,159	-	3,330	13,849	22,769	22,769	21,815	22,769	21,815	-	954	17,765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191,876	178,806	178,806	160,968	178,806	160,968	-	17,838	200,59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8,754	238,754	215,318	-	23,436	242,222	242,222	242,222	222,540	242,222	222,540	-	19,682	248,790
· 위탁수수료	238,754	238,754	215,318	-	23,436	242,222	242,222	242,222	222,540	242,222	222,540	-	19,682	248,790
- 일반용역비 (210-14)	182,966	182,966	166,690	-	16,276	-	-	-	-	-	-	-	-	-
- 일반수용비 (210-01)	36,299	36,299	32,469	-	3,830	36,497	40,647	40,647	39,758	40,647	39,758	-	889	30,429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9,489	19,489	16,159	-	3,330	13,849	22,769	22,769	21,815	22,769	21,815	-	954	17,765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191,876	178,806	178,806	160,968	178,806	160,968	-	17,838	200,59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 및 수탁은행에 지급하는 관리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② 추진경위

- '81.07.20 : 평균잔액의 2.2%
- '84.09.19 : 평균잔액의 2.0~1.7%
- '86.07.01 : 대출금잔액의 1.5%
- '89.04.10 : 대출금잔액의 1.17~0.75%
- '93.01.01 : 계정별 단위업무의 업무량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03. 2. 1 : 활동기준원가(Active Based Costing : ABC)를 산출하고 이를 정상처리 건수에 곱하여 위탁수수료를 산정
- '13.04.01 : 주택법 시행규칙 수수료의 50%(단, 사업자대출은 40%) 협약
- '15.07.01 :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위탁수수료 지급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 사업 수혜자 : 기금 수탁은행 및 전담운용기관 등

사 업 명
(8) 기타경비(주택) (1077-63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77	634
명칭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기금운영비	기타경비(주택)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타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관	전성배	정태현	진주형
		주택기금과	044-201-3337	044-201-3339	044-201-3346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운영비 등	328	294	294	362	277	△17	△5.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7	391	328	-	63	294	294	294	135	294	135		159	277
· 기타경비	337	391	328	-	63	294	294	294	135	294	135		159	277
○ 비목별 분류(합계)	337	391	328	-	63	294	294	294	135	294	135		159	277
· 일반수용비(210-01)	119	119	111	-	8	79	79	79	78	79	78		0	64
· 국내여비(220-01)	8	8	8	-	0	7	7	7	7	7	7		0	7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0	30	30	-	0	28	28	28	28	28	28		0	27
· 일반연구비(260-01)	180	234	179	-	56	180	180	180	21	180	21		159	-
· 정책연구비(260-02)	-	-	-	-	-	-	-	-	-	-	-			18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37	391	328	-	63	294	294	294	135	294	135		159	277
· 기타경비	337	391	328	-	63	294	294	294	135	294	135		159	277
- 일반수용비(210-01)	119	119	111	-	8	79	79	79	78	79	78		0	64
- 국내여비(220-01)	8	8	8	-	0	7	7	7	7	7	7		0	7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0	30	30	-	0	28	28	28	28	28	28		0	27
- 일반연구비 (260-01)	180	234	179	-	56	180	180	180	21	180	21		159	-
· 정책연구비(260-02)	-	-	-	-	-	-	-	-	-	-	-		-	1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 및 주택정책·주택금융 및 임대주택 활성화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한 연구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연구 및 교육 등 비용지급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 사업 수혜자 : 기금 수요자(주택도시 분야 제도개선의 수혜자)

사 업 명						
(9)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1131-4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7	26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403
명칭	분양주택등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용자)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2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박용선	서지훈	최인예
		주택정비과	044-201-3383	044-201-3387	044-201-3391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위험건축물이주 자금지원	7,461	6,000	7,000	7,0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 12월 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이월액	제외			
○ 기능별 분류(합계)	8,500	8,500	7,461 [7,461]	-	1,039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	-	7,000
· 위험건축물 이주 자금 지원	8,500	8,500	7,461 [7,461]	-	1,039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	-	7,000
○ 비목별 분류(합계)	8,500	8,500	7,461 [7,461]	-	1,039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	-	7,00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8,500	8,500	7,461 [7,461]	-	1,039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	-	7,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500	8,500	7,461 [7,461]	-	1,039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	-	7,000
· 위험건축물 이주 자금 지원	8,500	8,500	7,461 [7,461]	-	1,039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	-	7,000
-기타민간융자금 (450-04)	8,500	8,500	7,461 [7,461]	-	1,039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	-	7,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안전위험 주택은 신속한 이주 및 정비가 필요하나, 주민 소득수준이 낮고 이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원활한 이주가 어려움
- 국가차원의 이주비 저리융자지원을 통해 안전위험 주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노후한 위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제9조 (기금의 재원 등)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 ② 추진경위

- '17. 7 :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 추정 예산 신규 반영(120억원)
- '18. 3 :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사업 대상 확대*
 - * 정비사업 절차 상 이주단계에 있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노후·불량 건축물에 직접 거주하는 세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 2 :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대출사업 대상 및 지원한도 확대*
 -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내 노후·불량건축물에 거주하는 자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사업대상에 추가로 포함하고, 소득기준(5→6천만원) 및 지원한도(수도권 1.5→2.0억원, 지방 1.2→1.5억원) 확대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9,500	9,500	8,500	6,000	7,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은행에 위탁)
- 사업 수혜자 : 안전위험 주택 거주자, 노후·불량건축물 거주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지원	용자	안전위험주택 거주자 등	7,000	금리 1.3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제1항 제1호나목

사 업 명
(10) 층간소음 성능보강(1131-4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7	26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407
명칭	분양주택등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층간소음성능보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층간소음성 능보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유혜령	고성우	김현성
		주택건설공급과	201-3364	201-3366	201-3367
	사업시행주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현성	201-3367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융자금	-	15,000		5,400	2,700	△12,300	△82.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5,000		15,000	97	15,000	97	0	14,903	2,700
· 층간소음 성능보강	-	-	-	-	-	15,000		15,000	97	15,000	97	0	14,903	2,7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15,000		15,000	97	15,000	97	0	14,903	2,70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	-	-	-	-	15,000		15,000	97	15,000	97	0	14,903	2,7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15,000		15,000	97	15,000	97	0	14,903	2,700
· 융자금	-	-	-	-	-	15,000		15,000	97	15,000	97	0	14,903	2,70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	-	-	-	-	15,000		15,000	97	15,000	97	0	14,903	2,7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축주택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매트 구입·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용자 지원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8호(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② 추진경위

- '22.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 '22.8,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8.1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3~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	-	150억	27억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직접시행
- 사업 수혜자 : ❶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
❷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이면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8호(기금의 용도)

사 업 명						
(11)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1131-4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7	26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408
명칭	분양주택등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유혜령	고성우	김현성
	사업시행주체	주택건설공급과	201-3364	201-3366	201-336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현성	201-3367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계획		2023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융자금	-	4,000	-	2,400	1,200	△ 2,800	△ 7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4,000	-	4,000	-	4,000	-	-	4,000	1,200
·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	-	-	-	-	4,000	-	4,000	-	4,000	-	-	4,000	1,2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4,000	-	4,000	-	4,000	-	-	4,000	1,20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	-	-	-	-	4,000	-	4,000	-	4,000	-	-	4,000	1,2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4,000	-	4,000	-	4,000	-	-	4,000	1,200
· 융자금	-	-	-	-	-	4,000	-	4,000	-	4,000	-	-	4,000	1,20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	-	-	-	-	4,000	-	4,000	-	4,000	-	-	4,000	1,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축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층간소음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할 시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1호(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② 추진경위

- '22.8,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8.1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3~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	-	40억	24억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직접시행
- 사업 수혜자 :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는 리모델링 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1호(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사 업 명
(12) 분양주택(융자) (1134-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401
명칭	분양주택등지원	분양주택지원(융자)	분양주택(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분양주택 (융자)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김광림	곽상훈	임건혁
		주거복지정책관			
분양주택 (나눔형)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39	044-201-4519	044-201-3362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김광림	송우영	김기훈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39	044-201-4514	044-201-4578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공공주택본부	소성환	김세묵 서기관	배현식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05	044-201-4515	044-201-4521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융자금	201,707	1,395,541	1,116,433	2,047,832	2,015,332	619,791	44.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이월액 재지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3,100	203,100	201,707 [201,707]	-	1,393	1,395,541	1,116,433	1,116,433	575,995 [575,995]	1,116,433	575,995 [575,995]	-	540,438	2,015,332
· 분양주택(융자)	203,100	203,100	201,707 [201,707]	-	1,393	1,395,541	1,116,433	1,116,433	575,995 [575,995]	1,116,433	575,995 [575,995]	-	540,438	2,015,332
○ 비목별 분류(합계)	203,100	203,100	201,707 [201,707]	-	1,393	1,395,541	1,116,433	1,116,433	575,995 [575,995]	1,116,433	575,995 [575,995]	-	540,438	2,015,332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203,100	203,100	201,707 [201,707]	-	1,393	1,395,541	1,116,433	1,116,433	575,995 [575,995]	1,116,433	575,995 [575,995]	-	540,438	2,015,332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203,100	203,100	201,707 [201,707]	-	1,393	1,395,541	1,116,433	1,116,433	575,995 [575,995]	1,116,433	575,995 [575,995]	-	540,438	2,015,332
· 분양주택(융자)	203,100	203,100	201,707 [201,707]	-	1,393	1,395,541	1,116,433	1,116,433	575,995 [575,995]	1,116,433	575,995 [575,995]	-	540,438	2,015,332
-기타민간융자금 (450-04)	203,100	203,100	201,707 [201,707]	-	1,393	1,395,541	1,116,433	1,116,433	575,995 [575,995]	1,116,433	575,995 [575,995]	-	540,438	2,015,332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에 융자지원(~'81)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가목 :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국민주택의 건설)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1호나목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② 추진경위

- '83.06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지원을 위해 공공분양자금 신설
- '08.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공공분양 70만호) 건설)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분양주택 연평균 3.0만호 공급)
- '20.03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0만호 공급)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22.10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청년·무주택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81~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45,478	567,227	203,100	1,395,541	2,015,332

- 건설규모 : 분양주택 일반형 2.6만호 승인, 나눔형 4.6만호 승인 등 계속사업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민간사업자
- 사업 수혜자 : 무주택 서민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분양주택 (용자)	용자	지자체, LH, 민간사업자	2,015,332	100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 세제지원 등)

사 업 명						
(13)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231-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주택	사회복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401
명칭	구입·전세자금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주택구입자금 ·전월세자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관	전성배	정태현	진주형
	사업시행주체	주택기금과	044-201-3337	044-201-3339	044-201-3346
사업명	구분				
비정상거처 보증금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거복지정책관	허경민	이민기	황정원
	사업시행주체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504	044-201-4740	044-201-4868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융자금	8,521,691	10,380,027	11,360,527	12,364,500	12,364,500	1,984,473	19.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530,000	8,530,000	8,521,691	-	8,309	10,380,027	11,360,527	11,360,527	11,312,360	11,312,360	-	48,167	12,364,500			
· 주택구입·잔여자금(융자)	9,530,000	8,530,000	8,521,691	-	8,309	10,380,027	11,360,527	11,360,527	11,312,360	11,312,360	-	48,167	12,364,500			
○ 비목별 분류(합계)	9,530,000	8,530,000	8,521,691	-	8,309	10,380,027	11,360,527	11,360,527	11,312,360	11,312,360	-	48,167	12,364,500			
· 기타민간융자금(45004)	9,530,000	8,530,000	8,521,691	-	8,309	10,380,027	11,360,527	11,360,527	11,312,360	11,312,360	-	48,167	12,364,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무주택 서민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원활한 지원 및 저소득 서민에 대한 전월세 자금 지원으로 자금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금융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라목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 라. 준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② 추진경위

<주택구입 자금>

- '94. 4. :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주택 구입자금' 신설
- '00. 3. : 무주택 서민(근로자 이외의 자)을 위해 '서민주택 구입자금' 신설
- '01. 7.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신설 (자금부족으로 불연속적으로 운영)
①'01.7~'03.12월, ②'15.11~'06.11월, ③'10.9~'12.7월, ④'13.1~13.11월
- '13. 1.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이차보전 실행(은행계정으로 집행)
- '13. 9. : '손익/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설
- '13. 12. : '손익/수익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실시(12. 9일부터)
- '14. 1. :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출시(대출한도 2억원, 금리 연 2.8%~3.6%)
- '14. 3. : 공유형 모기지 요건 완화(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신청대상 확대)
- '15. 12.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한책임제도 도입 및 모기지신용보증 담보 취득
- '16. 1.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 및 대출신청 시기 완화
 - * 신혼가구 우대금리 0.2%p 신설 적용
 - * 신혼가구 대상을 결혼 전 2개월에서 결혼 전 3개월까지로 확대하여 대출신청시기를 완화
- '16. 5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생초자 금리우대 확대(최저 1.6%, 6개월 한시)
- '16. 9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인하(2.1~2.9%)
- '17. 1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인상(2.25~3.15%)
- '17. 5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금공 유동화 재원까지 유한책임대출 확대
- '17. 8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 '17. 12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 연소득 기준 완화(3,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 '18. 1 :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 출시(금리 1.7~2.75%)
- '18. 5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 연소득 기준 소 소득구간 확대
- '18. 6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육아휴직자 원금상환유예제도 도입(2회, 총2년)
- '18. 7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자 대상 금리인하(2.0%~3.15%)
- '18. 9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혼가구 및 유자녀가구 대출한도 상향(2→2.2~2.4억원)
- '19. 7 : 신혼가구 인정범위 확대(5년 → 7년 이내)
- '19. 9 : 기금 대출절차 간소화(비대면 채널 및 심사시스템 구축)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 '19. 12 : 다자녀가구 우대혜택 확대(우대금리 및 대출한도 상향)
- '20. 6 : '신혼 디딤돌대출' 대상자 확대(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추가)
- '20.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신혼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금리 1.55~2.1%)
- '21. 11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금리 2~2.75%)

- '21. 12.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 신혼 및 다자녀가구 대출한도 상향
- '22. 4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금리 2.15~3%)
- '22. 10 : '생애주기 구입자금' 신설. 만 30세 이상 디딤돌 차주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디딤돌 대출 허용(주거전용면적 60㎡, 주택가격 3억원 이하,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
- '23. 1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가격, LTV, 대출한도 상향(신혼부부 대상주택 5억→6억, 생초자 LTV80%, 호당 대출한도 확대 미혼단독생초 1.5억→2억, 일반 2.5억→3억, 신혼2.7억→4억)
- '23. 2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다자녀 가구 대출 요건 완화(주택가격 5억→6억, 호당 대출한도 3.1억→4억)
- '23. 6 : '전세피해임차인 전용 디딤돌대출' 신설(한도 4억원, 금리 1.85%~2.7%)
- '23.10 : 신혼부부 연소득 기준 완화(7천만원 → 8.5천만원)

<전·월세 자금>

- '90. 6. :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세민가구 전세자금' 신설
- '94. 4. :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신설
- '00. 3. : 무주택 서민(근로자 이외의 자)을 위해 '서민주택 전세자금' 신설
- '05. 11. : '영세민가구 전세자금' 금리인하(3→2%) 등 조건 개선
- '07. 11. : '영세민가구 전세자금'의 명칭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
- '14. 5. :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지역별 보증금 한도설정(수도권 3억, 지방 2억)
- '15. 1. : '근로자·서민전세'와 '저소득전세' 대출을 통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출시
'주거안정월세대출' 출시(연 2%, 3년간 720만원 한도)
- '15. 4.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2.5~3.1%), 신혼가구 소득요건 완화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인하(연 1.5%) 및 사회초년생 추가 등
- '15. 9.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도 버팀목 대출 지원 및 LH 임대주택 입주 고령자 계약금 70%도 지원
- '16. 3 : '안심형'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 '16. 5 : 버팀목전세대출 금리인하(2.3~2.9%) 및 대출 한도상향(수도권 최대 1.4억) 등
- '16. 8 : '주거안정월세대출' 조건 개선(일반형 도입, 대출기간 연장, 취급기관 확대 등)
- '17. 1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확대(0.5 → 0.7%p)
- '17. 2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중도금 대출 허용
- '17. 6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도입
- '17. 11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 확대(경기도시공사)
- '18. 1 : '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출시(금리 1.2~2.1%),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 출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확대(월 30→40만원)
- '18. 6 :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실시
- '18. 9 : '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상향(1.3~1.7억원→1.6~2.0억원)
- '18. 9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유자녀가구 대출한도 상향(0.8~1.2억원→1.6~2.0억원)

- '18. 12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 출시(금리 1.5~1.8%)
- '19. 7 : 신혼가구 인정범위 확대(5년 → 7년 이내)
- '19. 9 : 기금 대출절차 간소화(비대면 채널 및 심사시스템 구축)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 '19. 12 : 다자녀가구 우대혜택 확대(우대금리 및 대출한도 상향, 대출기간 확대)
- '19. 12 :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1.8%, 5천만원 한도) 신설
- '20. 5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확대 개편(연령 및 보증금 요건 완화,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 '21. 9 :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허용 및 생애주기형 버팀목대출 연계 지원
- '22. 1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일몰기한 연장('21년말→ '23년말) 및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 확대
- '22. 8 : 갭신만료 임차인 지원 강화(대출한도 수도권 1.8억, 지방 1.2억원)
- '22. 10 :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한도 상향(청년 0.7억→2억, 신혼부부 수도권 3억→4억·비수도권 2억→3억)
- '23. 1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금 대출' 및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지원 실시
- '23. 2 : 버팀목대출 다자녀 가구 대출한도 상향(수도권 2.2억→3억, 지방 1.8억→2억) 및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환까지 지원범위 확대
- '23. 3 : 전세피해 버팀목 임차보증금 한도 및 대출한도 상향(임차보증금 2억→3억, 대출한도 1.6억→2.4억)
- '23. 4 :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버팀목 대출(대환)' 상품 신설
- '23. 6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 변제금 전세자금대출' 상품 신설(보증금 3억 이하, 대출한도 2억 이내)
- '23.10 : 신혼부부 연소득 기준 완화(6천만원 → 7.5천만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구입자금) 1994년~, (전세자금) 1990년~
- 사업규모(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 억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99,122	103,144	85,217	113,605	123,645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소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서민

사 업 명
(14) 국민임대(융자) (1332-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2	401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국민임대주택지원(융자)	국민임대(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7~42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민임대 (융자)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김광림	곽상훈	임건혁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39	044-201-4519	044-201-336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융자금	546,742	300,114	157,445	157,653	157,653	△142,461	△47.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 획 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이월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50,225	550,225	546,742 [546,742]	-	3,483	300,114	157,445	157,445	148,344 [148,344]	157,445	148,344 [148,344]	-	9,101	157,653
· 국민임대(용자)	550,225	550,225	546,742 [546,742]	-	3,483	300,114	157,445	157,445	148,344 [148,344]	157,445	148,344 [148,344]	-	9,101	157,653
○ 비목별 분류(합계)	550,225	550,225	546,742 [546,742]	-	3,483	300,114	157,445	157,445	148,344 [148,344]	157,445	148,344 [148,344]	-	9,101	157,653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550,225	550,225	546,742 [546,742]	-	3,483	300,114	157,445	157,445	148,344 [148,344]	157,445	148,344 [148,344]	-	9,101	157,65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50,225	550,225	546,742 [546,742]	-	3,483	300,114	157,445	157,445	148,344 [148,344]	157,445	148,344 [148,344]	-	9,101	157,653
· 국민임대(용자)	550,225	550,225	546,742 [546,742]	-	3,483	300,114	157,445	157,445	148,344 [148,344]	157,445	148,344 [148,344]	-	9,101	157,653
-기타민간융자금 (450-04)	550,225	550,225	546,742 [546,742]	-	3,483	300,114	157,445	157,445	148,344 [148,344]	157,445	148,344 [148,344]	-	9,101	157,653

※ '23.12월말 기준 용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가목 :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국민주택의 건설)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1호가목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추진경위

- '98.10 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계획 수립
- '03.0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08.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국민임대 40만호) 건설)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국민임대 3.8만호 등 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 '13.12 4.1,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 ('13~'17년간) 행복주택 20 → 14만호, 국민임대 등 6 → 11만호, 민간임대 5→ 6만호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20.03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0만호 공급)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 '23.01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8~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835,402	709,861	550,225	300,114	157,653

- 건설규모 : '24년 0.5만호 준공 등 계속사업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소득 4분위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계층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민임대 (용자)	용자	지자체, LH	157,653	37~42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 세제지원 등)

사 업 명						
(15) 공공임대(융자) (1333-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401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임대 (융자)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김도곤	김동진	권준영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530	044-201-4445	044-201-4446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김광림	곽상훈	임건혁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39	044-201-4519	044-201-336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융자금	230,331	117,958	251,527	818,896	818,896	700,938	594.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3,536	233,536	230,331 [230,331]	-	3,205	117,958	251,527	251,527	246,578 [246,578]	251,527	246,578 [246,578]	-	4,949	818,896
· 공공임대(융자)	233,536	233,536	230,331 [230,331]	-	3,205	117,958	251,527	251,527	246,578 [246,578]	251,527	246,578 [246,578]	-	4,949	818,896
○ 비목별 분류(합계)	233,536	233,536	230,331 [230,331]	-	3,205	117,958	251,527	251,527	246,578 [246,578]	251,527	246,578 [246,578]	-	4,949	818,896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233,536	233,536	230,331 [230,331]	-	3,205	117,958	251,527	251,527	246,578 [246,578]	251,527	246,578 [246,578]	-	4,949	818,89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3,536	233,536	230,331 [230,331]	-	3,205	117,958	251,527	251,527	246,578 [246,578]	251,527	246,578 [246,578]	-	4,949	818,896
· 공공임대(융자)	233,536	233,536	230,331 [230,331]	-	3,205	117,958	251,527	251,527	246,578 [246,578]	251,527	246,578 [246,578]	-	4,949	818,896
-기타민간융자금 (450-04)	233,536	233,536	230,331 [230,331]	-	3,205	117,958	251,527	251,527	246,578 [246,578]	251,527	246,578 [246,578]	-	4,949	818,896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무주택 서민의 점진적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5,10년·분납임대 및 월임대로 부담이 없는 장기전세형 주택을 공급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가목 :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국민주택의 건설)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1호가목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추진경위

- '03.0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08.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국민임대 40만호) 건설)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국민임대 3.8만호 등 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 '13.12 4.1,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 ('13~'17년간) 행복주택 20 → 14만호, 국민임대 등 6 → 11만호, 민간임대 5 → 6만호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20.03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0만호 공급)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 '22.10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 '23.01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82~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736,445	287,502	233,536	187,958	818,896

- 건설규모 : '24년 뉴홈(선택형) 1.8만호 승인 및 계속사업 등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민간사업자
- 사업 수혜자 : 무주택 저소득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임대 (융자)	융자	지자체, LH, 민간사업자	818,896	100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 재지원 등)

사 업 명						
(16) 집주인임대주택사업 (1333-4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7	26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402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집주임대주택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2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집주인임대 주택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박용선	서지훈	최인예
		주택정비과	044-201-3383	044-201-3387	044-201-3391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 (B)		
집주인임대 주택사업	82,335	70,000	65,000	65,0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 12월 말)							2024 예 산
	예산액 (추경)	예 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 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이월액	제외			
○ 기능별 분류(합계)	83,000	83,000	82,335 [82,335]	-	665	70,000	70,000	49,812 [49,812]	70,000		-	20,188	65,000
· 집주인 임대 주택 사업	83,000	83,000	82,335 [82,335]	-	665	70,000	70,000	49,812 [49,812]	70,000		-	20,188	65,000
○ 비목별 분류(합계)	83,000	83,000	82,335 [82,335]	-	665	70,000	70,000	49,812 [49,812]	70,000		-	20,188	65,00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83,000	83,000	82,335 [82,335]	-	665	70,000	70,000	49,812 [49,812]	70,000		-	20,188	65,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3,000	83,000	82,335 [82,335]	-	665	70,000	70,000	49,812 [49,812]	70,000		-	20,188	65,000
· 집주인 임대 주택 사업	83,000	83,000	82,335 [82,335]	-	665	70,000	70,000	49,812 [49,812]	70,000		-	20,188	65,00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83,000	83,000	82,335 [82,335]	-	665	70,000	70,000	49,812 [49,812]	70,000		-	20,188	65,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되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마목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② 추진경위

- '17.11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

▶ 제19대 대통령 정책 공약(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 내 집 없는 서민들이 싸게, 안심하고 거주하는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
- 10조원대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 및 생활여건을 개선

- '19. 4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구조 개편(건설개량형, 매입형, 융자형을 융자형으로 통합)
- '22. 3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제도개선(주거취약계층 입주 모집확대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50,000	220,000	83,000	70,000	65,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은행에 위탁)
- 사업 수혜자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집주인임대 주택사업	융자	주택 소유자	65,000	금리 1.5~2.5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제1항 제1호나목 및 마목

사 업 명						
(17) 민간임대(융자) (1333-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404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민간임대(융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민간임대 (융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거복지정책관	김계홍	류나린	유서영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0	044-201-4109	044-201-4107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임대용자	1,651,242	1,708,844	1,708,844	1,477,009	1,477,009	△ 231,835	△1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53,931	1,653,931	1,651,242	-	2,689	1,708,844	1,708,844	1,708,844	1,660,582	1,708,844	1,660,582	-	48,262	1,477,009
· 공공지원민간임대	1,400,480	746,808	746,808	-	-	1,048,632	1,048,632	1,048,632	479,900	1,048,632	479,900	-	-	829,665
· 장기임대 등	103,451	886,438	886,438	-	-	619,156	619,156	619,156	1,168,279	619,156	1,168,279	-	-	615,600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150,000	20,685	17,996	-	2,689	41,056	41,056	41,056	12,403	41,056	12,403	-	-	31,744
○ 비목별 분류(합계)	1,653,931	1,653,931	1,651,242	-	2,689	1,708,844	1,708,844	1,708,844	1,660,582	1,708,844	1,660,582	-	48,262	1,477,009
· 기 타 민 간 용 자 금 (450-04)	1,653,931	1,653,931	1,651,242	-	2,689	1,708,844	1,708,844	1,708,844	1,660,582	1,708,844	1,660,582	-	48,262	1,477,009

※ '23.12월말 기준 용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용자 지원하는 것임
- (장기임대 등) 동 내역사업은 주거지원계층 및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용자 지원하는 것임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민간 PF대출 등을 이용하던 오피스텔 건설임대사업자가 전세 공급시 민간임대 건설자금 대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17.11.29)
 -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평균 3.3만호 공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8.7.17. 시행)
-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20.11.19.)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22.7.2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57,640	2,054,750	1,653,931	1,708,844	1,477,0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임대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지원민간임대)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장기임대 등)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95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준주택전세전환지원)	호당 평균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민간임대사업자	80백만원 이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사 업 명						
(18) 행복주택(융자) (1335-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401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행복주택(융자)	행복주택(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4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행복주택 (융자)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김광립	곽상훈	임건혁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39	044-201-4519	044-201-336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융자금	1,318,195	1,004,089	620,089	844,377	838,319	△165,770	△16.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이월액 계정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19,799	1,319,799	1,318,195 [1,318,195]	-	1,604	1,004,089	620,089	620,089	536,346 [536,346]	620,089	536,346 [536,346]	-	83,743	838,319
· 행복주택(융자)	1,319,799	1,319,799	1,318,195 [1,318,195]	-	1,604	1,004,089	620,089	620,089	536,346 [536,346]	620,089	536,346 [536,346]	-	83,743	838,319
○ 비목별 분류(합계)	1,319,799	1,319,799	1,318,195 [1,318,195]	-	1,604	1,004,089	620,089	620,089	536,346 [536,346]	620,089	536,346 [536,346]	-	83,743	838,319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319,799	1,319,799	1,318,195 [1,318,195]	-	1,604	1,004,089	620,089	620,089	536,346 [536,346]	620,089	536,346 [536,346]	-	83,743	838,31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19,799	1,319,799	1,318,195 [1,318,195]	-	1,604	1,004,089	620,089	620,089	536,346 [536,346]	620,089	536,346 [536,346]	-	83,743	838,319
· 행복주택(융자)	1,319,799	1,319,799	1,318,195 [1,318,195]	-	1,604	1,004,089	620,089	620,089	536,346 [536,346]	620,089	536,346 [536,346]	-	83,743	838,319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319,799	1,319,799	1,318,195 [1,318,195]	-	1,604	1,004,089	620,089	620,089	536,346 [536,346]	620,089	536,346 [536,346]	-	83,743	838,319

※ '23.12월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의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가목 :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국민주택의 건설)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1호가목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추진경위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국민임대 3.8만호 등 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 '13.12 4.1,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 ('13~'17년간) 행복주택 20 → 14만호, 국민임대 등 6 → 11만호, 민간임대 5→ 6만호
- '16.04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
* '17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하여 전체공급 물량을 14만호 → 15만호로 확대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20.03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0만호 공급)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 '23.01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3~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71,273	1,781,583	1,319,799	1,004,089	838,319

- 건설규모 : '24년 2.2만호 준공 등 계속사업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80%),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20%)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행복주택 (용자)	용자	지자체, LH	838,319	40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 재지원 등)

사 업 명
(19) 다가구매입임대(용자) (1336-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6	401
명칭	임대주택지원(용자)	다가구매입임대(용자)	다가구매입임대(용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다가구 매입임대 (용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김도곤	류경진 서기관	최진숙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530	044-201-4533	044-201-4528
	사업시행주체	LH, 지방공사	-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융자금	5,440,305	3,237,000	1,533,120	3,612,000	3,612,000	375,000	11.6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 획 액 (수 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5,809,250 (5,459,932)	5,459,932	5,440,305 (5,440,305)	-	19,627	3,237,000	1,533,120	1,533,120	1,461,701 (1,461,701)	-	71,419	3,612,000
· 다가구매입임대(융자)	5,809,250 (5,459,932)	5,459,932	5,440,305 (5,440,305)	-	19,627	3,237,000	1,533,120	1,533,120	1,461,701 (1,461,701)	-	71,419	3,612,000
○ 비목별 분류(합계)	5,809,250 (5,459,932)	5,459,932	5,440,305 (5,440,305)	-	19,627	3,237,000	1,533,120	1,533,120	1,461,701 (1,461,701)	-	71,419	3,612,000
· 기 타 민 간 융 자 금 (450-04)	5,809,250 (5,459,932)	5,459,932	5,440,305 (5,440,305)	-	19,627	3,237,000	1,533,120	1,533,120	1,461,701 (1,461,701)	-	71,419	3,612,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809,250 (5,459,932)	5,459,932	5,440,305 (5,440,305)	-	19,627	3,237,000	1,533,120	1,533,120	1,461,701 (1,461,701)	-	71,419	3,612,000
· 다가구매입임대(융자)	5,809,250 (5,459,932)	5,459,932	5,440,305 (5,440,305)	-	19,627	3,237,000	1,533,120	1,533,120	1,461,701 (1,461,701)	-	71,419	3,612,000
- 기 타 민 간 융 자 금 (450-04)	5,809,250 (5,459,932)	5,459,932	5,440,305 (5,440,305)	-	19,627	3,237,000	1,533,120	1,533,120	1,461,701 (1,461,701)	-	71,419	3,612,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주택도시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43조

② 추진경위

- '04. 2 저소득서민층 주거복지 확대방안 발표
 -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
- '05. 4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
 - 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급 확대 : 10,000호 → 50,000호
(연간 4,500호, '15년까지 총 50,000호)
 - 정부지원 확대(재정 45%, 기금 40%)
- '06. 8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다가구 물량확대
 - 다가구 5만호(연간 6,500호)
- '08. 5 '08년 주택종합계획
 - 기존주택 매입임대 : '08~'12년까지 매년 7,000호씩 공급
- '10. 9 「8·15 경축사 후속조치」
 -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연 2만호 수준)
- '11. 1 「1·13 전월세가격 안정화방안」 추진과제
- '12. 5 '12년 주택종합계획
 - 보금자리주택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
- '13. 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
- '14. 1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 '15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15년 5만호 공급)
- '15. 9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
 - '16년 리모델링 매입임대 2천호(기존물량전환 1천호, 순증 1천호) 공급
- '17.11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 '18~'22년간 매입형 14.8만호 공급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기숙사형, 아이돌봄시설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 '20. 11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공공 전세 주택 신규 도입 및 신축형 매입임대주택 등 단기 임대주택공급 확대 등
- '22. 8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23~'27년간 매입형 17.5만호 공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2,402,767	5,655,550	5,809,250	3,237,000	3,612,000

- 기타 : '23년 3.5만호 공급(매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쪽방 거주자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 및 주거취약 계층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다가구매입 임대(용자)	용자	공공주택 사업자	3,612,000	50	'05. 4. 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사 업 명
(20) 전세임대(융자) (1337-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401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전세임대주택지원(융자)	전세임대(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전세임대 (융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김도곤	유근명	최진숙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530	044-201-4479	044-201-4535
	사업시행주체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입전세임대 사업처	김도관 차장	055-922-3485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전세임대(용자)	4,775,041	4,174,950	5,087,730	4,546,931	4,546,931	371,981	8.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계)	4,775,041	4,775,041	4,661,183 [4,661,183]	-	-	4,174,950	5,087,730	5,087,730	4,780,620 [4,780,620]	5,087,730	4,780,620 [4,780,620]	-	307,110	4,546,931		
· 전세임대(용자)	4,775,041	4,775,041	4,661,183 [4,661,183]	-	-	4,174,950	5,087,730	5,087,730	4,780,620 [4,780,620]	5,087,730	4,780,620 [4,780,620]	-	307,110	4,546,931		
○ 비목별 분류(계)	4,775,041	4,775,041	4,661,183 [4,661,183]	-	-	4,174,950	5,087,730	5,087,730	4,780,620 [4,780,620]	5,087,730	4,780,620 [4,780,620]	-	307,110	4,546,931		
· 기 타 민 간 용 자 금 (450-04)	4,775,041	4,775,041	4,661,183 [4,661,183]	-	-	4,174,950	5,087,730	5,087,730	4,780,620 [4,780,620]	5,087,730	4,780,620 [4,780,620]	-	307,110	4,546,93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775,041	4,775,041	4,661,183 [4,661,183]	-	-	4,174,950	5,087,730	5,087,730	4,780,620 [4,780,620]	5,087,730	4,780,620 [4,780,620]	-	307,110	4,546,931		
· 전세임대(용자)	4,775,041	4,775,041	4,661,183 [4,661,183]	-	-	4,174,950	5,087,730	5,087,730	4,780,620 [4,780,620]	5,087,730	4,780,620 [4,780,620]	-	307,110	4,546,931		
- 기 타 민 간 용 자 금 (450-04)	4,775,041	4,775,041	4,661,183 [4,661,183]	-	-	4,174,950	5,087,730	5,087,730	4,780,620 [4,780,620]	5,087,730	4,780,620 [4,780,620]	-	307,110	4,546,931		

※ '23.12월말 기준 용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도모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5조의2

② 추진경위

- '04. 9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시행
- '05. 4 :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 도입
- '06. 8 :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전세임대 물량확대
전세임대 40,300호(연간 5,800호)
- '08. 5 : '08년 주택종합계획
기존주택 전세임대 : '08~'12년까지 총 46,800호 공급
- '10. 9 : 「8·15 경축사 후속조치」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10년~'12년까지 연 2만호 수준으로 공급)
- '11. 1 : 「1·13 전월세가격 안정화방안」 추진과제
- '12. 5 : '12년 주택종합계획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
- '13. 4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
- '14. 10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15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15년 5만호 공급)
- '15. 9 :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
'16년 전세임대주택 물량확대 공급(고령층 신설 2천호, 대학생 확대 2천호)
('16년 2.7만호 → 3.1만호)
- '16. 4 : 전세임대 1만호 확대(3.1만 → 4.1만호) 및 지원단가 호당 500만원 상향 발표
- '17. 4 : 전세임대 7천호 확대 공급(2.7만 → 3.4만호)
- '17. 11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18~'22년간 임차형 17만호 공급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다자녀 전세임대 신규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0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4,659,250	4,812,750	4,775,041	4,732,950	4,546,93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세임대 (용자)	보조	LH 및 지방공사	4,543,931	용자 80~10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및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사 업 명
(21) 통합공공임대(융자) (1338-4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8	406
명칭	임대주택지원(융자)	통합공공임대주택(융자)	통합공공임대(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3~41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통합공공임대 (융자)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김광림	곽상훈	임건혁
		주거복지정책관			
모듈러주택 (융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39	044-201-4519	044-201-3362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유혜령	이광우	유다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4	044-201-3369	044-201-337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융자금	168,482	1,190,038	522,404	1,417,137	1,401,288	211,250	17.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 획 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8,866	168,866	168,482 [168,482]	-	384	1,190,088	522,404	522,404	516,442 [516,442]	522,404	516,442 [516,442]	-	5,962	1,401,288
· 통합공공임대(용자)	168,866	168,866	168,482 [168,482]	-	384	1,188,568	522,404	522,404	516,442 [516,442]	522,404	516,442 [516,442]	-	5,962	1,401,288
○ 비목별 분류(합계)	168,866	168,866	168,482 [168,482]	-	384	1,190,088	522,404	522,404	516,442 [516,442]	522,404	516,442 [516,442]	-	5,962	1,401,288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68,866	168,866	168,482 [168,482]	-	384	1,190,088	522,404	522,404	516,442 [516,442]	522,404	516,442 [516,442]	-	5,962	1,401,28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8,866	168,866	168,482 [168,482]	-	384	1,190,088	522,404	522,404	516,442 [516,442]	522,404	516,442 [516,442]	-	5,962	1,401,288
· 통합공공임대(용자)	168,866	168,866	168,482 [168,482]	-	384	1,188,568	522,404	522,404	516,442 [516,442]	522,404	516,442 [516,442]	-	5,962	1,401,288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68,866	168,866	168,482 [168,482]	-	384	1,188,568	522,404	522,404	516,442 [516,442]	522,404	516,442 [516,442]	-	5,962	1,401,288

※ '23.12월말 기준 용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1월말 최종 확정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주거환경 조성 및 저소득 층의 주거안정 도모
- (모듈러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부 사업에 대해 모듈러공법을 적용(1,000호)하여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용자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가목 :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국민주택의 건설)

-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의2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3 주거복지 로드맵 2.0발표('21년부터 일부 공임주택 유형통합 모델 적용)
- '20.11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 중형주택(전용 60~85㎡) 신규 도입 등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 '23.01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1~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92,904	168,866	1,120,038	1,401,288

- 건설규모 : '24년 3.5만호 신규승인 및 계속사업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무주택 저소득 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통합공공임대 (용자)	용자	지자체, LH	1,401,288	33~41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제 지원 등)

사 업 명						
(2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1440-4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02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다가구매입임대(출자)	다가구매입임대(출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김도곤	류경진 서기관	최진숙
		주거복지정책관			
	사업시행주체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530	044-201-4533	044-201-4528
		LH, 지방공사	-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출자금	2,946,677	2,839,300	2,698,784	2,434,322	2,434,322	△404,978	△14.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3,346,700 (2,971,050)	2,971,050	2,946,677 (2,946,677)	-	24,373	2,839,300	2,698,784	2,698,784	2,471,225 (2,471,225)	-	227,559	2,434,322
·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3,346,700 (2,971,050)	2,971,050	2,946,677 (2,946,677)	-	24,373	2,839,300	2,698,784	2,698,784	2,471,225 (2,471,225)	-	227,559	2,434,322
○ 비목별 분류(합계)	3,346,700 (2,971,050)	2,971,050	2,946,677 (2,946,677)	-	24,373	2,839,300	2,698,784	2,698,784	2,471,225 (2,471,225)	-	227,559	2,434,322
·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1,004,010 (641,553)	641,553	617,180 (617,180)	-	24,373	851,790	711,274	711,274	574,857 (574,857)	-	136,417	624,646
· 일반출자금(460-01)	2,342,690 (2,329,497)	2,329,497	2,329,497 (2,329,497)	-	-	1,987,510	1,987,510	1,987,510	1,896,368 (1,896,368)	-	91,142	1,809,67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346,700 (2,971,050)	2,971,050	2,946,677 (2,946,677)	-	24,373	2,839,300	2,698,784	2,698,784	2,471,225 (2,471,225)	-	227,559	2,434,322
· 자치단체이전	1,004,010 (641,553)	641,553	617,180 (617,180)	-	24,373	851,790	711,274	711,274	574,857 (574,857)	-	136,417	624,646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004,010 (641,553)	641,553	617,180 (617,180)	-	24,373	851,790	711,274	711,274	574,857 (574,857)	-	136,417	624,646
· 출자금	2,342,690 (2,329,497)	2,329,497	2,329,497 (2,329,497)	-	-	1,987,510	1,987,510	1,987,510	1,896,368 (1,896,368)	-	91,142	1,809,676
-일반출자금(460-01)	2,342,690 (2,329,497)	2,329,497	2,329,497 (2,329,497)	-	-	1,987,510	1,987,510	1,987,510	1,896,368 (1,896,368)	-	91,142	1,809,6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제43조

② 추진경위

- '04. 2 저소득서민층 주거복지 확대방안 발표
 -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

- '05. 4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
 - 다가구주택 등 매입·공급 확대 : 10,000호 → 50,000호
(연간 4,500호, '15년까지 총 50,000호)
 - 정부지원 확대(재정 45%, 기금 40%)
- '06. 8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다가구 물량확대
 - 다가구 5만호(연간 6,500호)
- '08. 5 '08년 주택종합계획
 - 기존주택 매입임대 : '08~'12년까지 매년 7,000호씩 공급
- '10. 9 「8·15 경축사 후속조치」
 -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연 2만호 수준)
- '11. 1 「1·13 전월세가격 안정화방안」 추진과제
- '12. 5 '12년 주택종합계획
 - 보금자리주택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
- '13. 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
- '14. 1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 '15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15년 5만호 공급)
- '15. 9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
 - '16년 리모델링 매입임대 2천호(기존물량전환 1천호, 순증 1천호) 공급
- '17.11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 '18~'22년간 매입형 14.8만호 공급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기숙사형, 아이돌봄시설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 '20. 11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공공 전세 주택 신규 도입 및 신축형 매입임대주택 등 단기 임대주택공급 확대 등
- '22. 8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23~'27년간 매입형 17.5만호 공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1,911,804	3,262,900	3,346,700	2,839,300	2,434,322

- 기타 : '23년 3.5만호 공급(매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쪽방 거주자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 및 주거취약 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다가구매입 임대(출자)	출자	LH	1,809,676	30~50	'05. 4. 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보조	지방공사	624,646		
	합계		2,434,322		

사 업 명						
(23) 전세·매입임대경상보조 (1440-4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03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전세매입임대경상보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김도곤	유근명	최진숙
		주거복지정책관	044-201-4530	044-201-4479	044-201-4535
	사업시행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전세임대 사업처	김도관 차장	055-922-3485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이전 등	138,328	123,700	138,650	145,290	145,290	21,590	1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 획 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잔액		이월 예산액	불 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9,892	139,892	138,328 (138,328)		1,564	123,700	138,650	138,650	136,278 [136,278]	138,650	136,278 [136,278]	-	2,372	145,290
· 전세·매입임대경 상보조	139,892	139,892	138,328 (138,328)		1,564	123,700	138,650	138,650	136,278 [136,278]	138,650	136,278 [136,278]	-	-	145,290
○ 비목별 분류(합계)	139,892	139,892	138,328 (138,328)		1,564	123,700	138,650	138,650	136,278 [136,278]	138,650	136,278 [136,278]	-	2,372	145,29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125,039	125,039	123,475 (123,475)		1,564	86,590	98,255	115,840	115,840 [115,840]	115,840	115,840 [115,840]	-	-	102,903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4,853	14,853	14,853 (14,853)		-	37,110	40,395	22,810	20,438 [20,438]	22,810	20,438 [20,438]	-	2,372	42,38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9,892	139,892	138,328 (138,328)		1,564	123,700	138,650	138,650	136,278 [136,278]	138,650	136,278 [136,278]	-	2,372	145,290
· 민간이전	125,039	125,039	123,475 (123,475)		1,564	86,590	98,255	115,840	115,840 [115,840]	115,840	115,840 [115,840]			102,903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125,039	125,039	123,475 (123,475)		1,564	86,590	98,255	115,840	115,840 [115,840]	115,840	115,840 [115,840]			102,903
· 자치단체이전	14,853	14,853	14,853 (14,853)		-	37,110	40,395	22,810	20,438 [20,438]	22,810	20,438 [20,438]		2,372	42,387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4,853	14,853	14,853 (14,853)		-	37,110	40,394	22,810	20,438 [20,438]	22,810	20,438 [20,438]		2,372	42,3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전세·매입임대경상보조)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 및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 사업의 주택 관리·운영 등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및 제43조, 제45조의2

② 추진경위

- '04. 2 : 저소득서민층 주거복지 확대방안 발표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
- '04. 9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제도 도입·시행
- '05. 4 :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발표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 도입, 다가구 주택 등 매입·공급 확대
- '06. 8 :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물량확대
전세임대 40,300호(연간 5,800호), 다가구 50,000호(연간 6,500호)
- '08. 5 : '08년 주택종합계획
기존주택 전세임대 : '08~'12년까지 총 46,800호 공급
기존주택 매입임대 : '08~'12년까지 매년 7,000호씩 공급
- '10. 9 : 「8·15 경축사 후속조치」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
(‘10년~’12년까지 연 2만호 수준으로 공급)
- '11. 1 : 「1·13 전월세가격 안정화방안」 추진과제
- '12. 5 : '12년 주택종합계획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2만호 공급
- '13. 4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17년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 연4만호 공급
- '14. 10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15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호 추가공급('15년 5만호 공급)

- '15. 9 :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
 '16년 리모델링 매입임대 2천호(기존물량전환 1천호, 순증 1천호) 공급
 '16년 전세임대주택 물량확대 공급(고령층 신설 2천호, 대학생 확대 2천호)
 ('16년 2.7만호 → 3.1만호)
- '16. 4 : 전세임대 1만호 확대(3.1만 → 4.1만호) 및 지원단가 호당 500만원 상향 발표
- '17. 4 : 전세임대 7천호 확대 공급(2.7만 → 3.4만호)
- '17. 11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18~'22년간 매입형 14.8만호, 임차형 17만호 공급
- '18. 7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기숙사형 신규 도입 등
- '19. 10 : 아동 주거권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발표
 다자녀 매입임대·전세임대 신규 도입
- '20. 11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126,915	105,815	138,328	123,700	145,290

- 기타: '23년 전세임대 3.7만호 공급, 매입임대 3.5만호 공급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세매입 임대 경상보조	보조	한국토지 주택공사, 지자체 보조	145,290	10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및 제43조, 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사 업 명						
(24) 국민임대출자 (1440-4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04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국민임대출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20~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민임대 출자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김광림	곽상훈	임건혁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39	044-201-4519	044-201-336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출자금 등	174,815	219,221	68,271	117,366	117,366	△101,855	△46.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이월액 잔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0,816	190,816	174,815 [174,815]	-	16,001	219,221	68,271	68,271	56,313 [56,313]	68,271	56,313 [56,313]	-	11,958	117,366
· 국민임대출자	190,816	190,816	174,815 [174,815]	-	16,001	219,221	68,271	68,271	56,313 [56,313]	68,271	56,313 [56,313]	-	11,958	117,366
○ 비목별 분류(합계)	190,816	190,816	174,815 [174,815]	-	16,001	219,221	68,271	68,271	56,313 [56,313]	68,271	56,313 [56,313]	-	11,958	117,366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78,456	78,456	68,253 (68,253)	-	10,203	42,519	59,519	59,519	47,820 [47,820]	59,519	47,820 [47,820]	-	11,699	5,889
· 일반출자금(460-01)	112,360	112,360	106,562 (106,562)	-	5,798	176,702	8,752	8,752	8,493 [8,493]	8,752	8,493 [8,493]	-	259	111,47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90,816	190,816	174,815 [174,815]	-	16,001	219,221	68,271	68,271	56,313 [56,313]	68,271	56,313 [56,313]	-	11,958	117,366
· 국민임대출자	190,816	190,816	174,815 [174,815]	-	16,001	219,221	68,271	68,271	56,313 [56,313]	68,271	56,313 [56,313]	-	11,958	117,366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78,456	78,456	68,253 (68,253)	-	10,203	42,519	59,519	59,519	47,820 [47,820]	59,519	47,820 [47,820]	-	11,699	5,889
· 일반출자금(460-01)	112,360	112,360	106,562 (106,562)	-	5,798	176,702	8,752	8,752	8,493 [8,493]	8,752	8,493 [8,493]	-	259	111,4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시기금법 제9조제1항가목 :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국민주택의 건설)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1호가목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추진경위

- '98.10 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계획 수립
- '03.0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08.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국민임대 40만호) 건설)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국민임대 3.8만호 등 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 '13.12 4.1,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 ('13~'17년간) 행복주택 20 → 14만호, 국민임대 등 6 → 11만호, 민간임대 5→ 6만호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20.03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0만호 공급)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 '23.01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98~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75,197	258,507	190,816	219,221	117,366

- 건설규모 : '24년 0.5만호 준공 등 계속사업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소득 4분위 이하의 무주택 저소득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민임대 출자	출자	LH	111,477	20~50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 세제지원 등)
	보조	지자체	5,889		
	합계		117,366		

사 업 명						
(25) 영구임대출자 (1440-4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07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국민임대출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85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영구임대 출자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김광림	곽상훈	임건혁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39	044-201-4519	044-201-336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출자금 등	203,166	179,683	133,683	82,321	82,321	△ 97,362	△ 54.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 획 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	전년도이월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				
○ 기능별 분류(합계)	225,713	225,713	203,166 [203,166]	-	22,547	179,683	133,683	133,683	101,174 [101,174]	133,683	101,174 [101,174]	-	32,509	82,321	
· 영구임대출자	225,713	225,713	203,166 [203,166]	-	22,547	179,683	133,683	133,683	101,174 [101,174]	133,683	101,174 [101,174]	-	32,509	82,321	
○ 비목별 분류(합계)	225,713	225,713	203,166 [203,166]	-	22,547	179,683	133,683	133,683	101,174 [101,174]	133,683	101,174 [101,174]	-	32,509	82,321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41.434	41.434	22,063 (22,063)	-	19,371	32,950	27,151	27,151	25,123 [25,123]	27,151	25,123 [25,123]	-	2,028	3,995	
· 일반출자금(460-01)	184,279	184,279	181,104 (181,104)	-	3,176	146,733	106,532	106,532	76,051 [76,051]	106,532	76,051 [76,051]	-	30,481	78,32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25,713	225,713	203,166 [203,166]	-	22,547	179,683	133,683	133,683	101,174 [101,174]	133,683	101,174 [101,174]	-	32,509	82,321	
· 영구임대출자	225,713	225,713	203,166 [203,166]	-	22,547	179,683	133,683	133,683	101,174 [101,174]	133,683	101,174 [101,174]	-	32,509	82,321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41.434	41.434	22,063 (22,063)	-	19,371	32,950	27,151	27,151	25,123 [25,123]	27,151	25,123 [25,123]	-	2,028	3,995	
-일반출자금(460-01)	184,279	184,279	181,104 (181,104)	-	3,176	146,733	106,532	106,532	76,051 [76,051]	106,532	76,051 [76,051]	-	30,481	78,3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시기금법 제9조제1항가목 :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국민주택의 건설)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1호가목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추진경위

- '98.10 국민임대주택 5만호 건설계획 수립
- '03.0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발표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08.0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발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국민임대 40만호) 건설)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국민임대 3.8만호 등 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 '13.12 4.1,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 ('13~'17년간) 행복주택 20 → 14만호, 국민임대 등 6 → 11만호, 민간임대 5→ 6만호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20.03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0만호 공급)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 '23.01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89~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63,476	405,201	225,713	179,683	82,321

- 건설규모 : '24년 0.2만호 준공 등 계속사업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의 최저소득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영구임대 출자	출자	LH	3,995	85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 제지원 등)
	보조	지자체	78,326		
	합계		82,321		

사 업 명						
(26) 행복주택출자 (1440-4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08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행복주택출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행복주택 출자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김광림	곽상훈	임건혁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39	044-201-4519	044-201-336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출자금 등	564,342	684,607	461,607	532,913	528,783	△155,824	△22.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	전년도이월액 잔액		이월 예산액	불 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			
○ 기능별 분류(합계)	775,293	775,293	564,342 [564,342]	-	210,951	684,607	461,607	461,607	421,615 [421,615]	461,607	421,615 [421,615]	-	39,992	528,783
· 행복주택출자	775,293	775,293	564,342 [564,342]	-	210,951	684,607	461,607	461,607	421,615 [421,615]	461,607	421,615 [421,615]	-	39,992	528,783
○ 비목별 분류(합계)	775,293	775,293	564,342 [564,342]	-	210,951	684,607	461,607	461,607	421,615 [421,615]	461,607	421,615 [421,615]	-	39,992	528,783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53,145	253,145	140,883 (140,883)	-	112,262	122,643	155,843	155,843	119,433 [119,433]	155,843	119,433 [119,433]	-	36,410	154,897
· 일반출자금(460-01)	522,148	522,148	423,459 (423,459)	-	98,689	561,964	305,764	305,764	302,182 [302,182]	305,764	302,182 [302,182]	-	3,582	373,88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75,293	775,293	564,342 [564,342]	-	210,951	684,607	461,607	461,607	421,615 [421,615]	461,607	421,615 [421,615]	-	39,992	528,783
· 행복주택출자	775,293	775,293	564,342 [564,342]	-	210,951	684,607	461,607	461,607	421,615 [421,615]	461,607	421,615 [421,615]	-	39,992	528,783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53,145	253,145	140,883 (140,883)	-	112,262	122,643	155,843	155,843	119,433 [119,433]	155,843	119,433 [119,433]	-	36,410	154,897
-일반출자금(460-01)	522,148	522,148	423,459 (423,459)	-	98,689	561,964	305,764	305,764	302,182 [302,182]	305,764	302,182 [302,182]	-	3,582	373,8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의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가목 :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국민주택의 건설)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1호가목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추진경위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국민임대 3.8만호 등 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 '13.12 4.1,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 ('13~'17년간) 행복주택 20 → 14만호, 국민임대 등 6 → 11만호, 민간임대 5→ 6만호
- '16.04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
* '17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하여 전체공급 물량을 14만호 → 15만호로 확대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20.03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0만호 공급)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 '23.01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3~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267,123	1,105,291	775,293	684,607	528,783

- 건설규모 : '24년 2.2만호 준공 등 계속사업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보고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80%),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20%)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행복주택 출자	출자	LH	373,886	30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 채지원 등)
	보자	지자체	154,897		
	합계		528,783		

사 업 명
(27) 임대주택리츠출자 (1440-4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09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임대주택리츠출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임대주택리츠 출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김계홍	류나린	유서영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0	044-201-4109	044-201-4107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임대주택 리츠출자	266,799	422,110	322,110	300,000	300,000	△122,110	△28.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7월 말)								2024 계 획		
	계 획 액 (수 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잔 고 이월액		이 월 예 상 액	불 용 예 상 액			
						당 초	수 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5,610	279,100	268,771	-	10,329	422,110	322,110	322,110	310,900	322,110	310,900	-	11,210	300,000		
· 민간임대리츠	355,610	279,100	268,771	-	10,329	422,110	322,110	322,110	310,900	322,110	310,900	-	11,210	300,000		
○ 비목별 분류(합계)	355,610	279,100	268,771	-	10,329	422,110	322,110	322,110	310,900	322,110	310,900	-	11,210	300,000		
· 일반출자금(460-01)	355,610	279,100	268,771	-	10,329	422,110	322,110	322,110	310,900	322,110	310,900	-	11,210	30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과 공공이 출자한 리츠를 활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모형을 마련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민간임대리츠)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3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3호

제9조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발표('15.1.13)
 - *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계획 발표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16.4.28)
 - * '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17.11.29)
 -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평균 3.3만호 공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18.7.17. 시행)
 - * 민간임대주택 체계 개편 및 공공성 강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8.18. 시행)
 - *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폐지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22.6.21.)
-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22.7.20.)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내집마련 리츠 도입('22.8.16.)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522,120	453,207	335,610	422,110	30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민간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
- 사업 수혜자 : 무주택 임차가구,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임대리츠	출자	-	300,000	10% 이상	주택도시보증법 제9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사 업 명						
(28) 통합공공임대출자 (1440-4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11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통합공공임대출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3~39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통합공공임대 출자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김광림	곽상훈	임건혁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39	044-201-4519	044-201-336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출자금 등	196,201	1,070,374	570,374	1,220,076	1,216,141	145,767	1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 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이월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2,753	272,753	196,201 [196,201]	-	76,552	1,070,374	570,374	570,374	456,569 [456,569]	570,374	456,569 [456,569]	-	113,805	1,216,141
· 통합공공임대출자	272,753	272,753	196,201 [196,201]	-	76,552	1,070,374	570,374	570,374	456,569 [456,569]	570,374	456,569 [456,569]	-	113,805	1,216,141
○ 비목별 분류(합계)	272,753	272,753	196,201 [196,201]	-	76,552	1,070,374	570,374	570,374	456,569 [456,569]	570,374	456,569 [456,569]	-	113,805	1,216,141
· 연구용역비 (260-10)	-	-	-	-	-	380	380	380	326 [326]	380	326 [326]	-	54	-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02,326	102,326	43,896 (43,896)	-	58,430	205,013	120,013	120,013	80,179 [80,179]	120,013	80,179 [80,179]	-	39,834	273,276
· 일반출자금(460-01)	170,427	170,427	152,306 (152,306)	-	18,121	864,981	449,981	449,981	376,064 [376,064]	449,981	376,064 [376,064]	-	73,917	942,86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72,753	272,753	196,201 [196,201]	-	76,552	1,070,374	570,374	570,374	456,569 [456,569]	570,374	456,569 [456,569]	-	113,805	1,216,141
· 통합공공임대출자	272,753	272,753	196,201 [196,201]	-	76,552	1,070,374	570,374	570,374	456,569 [456,569]	570,374	456,569 [456,569]	-	113,805	1,216,141
-연구용역비 (260-01)	-	-	-	-	-	380	380	380	326 [326]	380	326 [326]	-	54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02,326	102,326	43,896 (43,896)	-	58,430	205,013	120,013	120,013	80,179 [80,179]	120,013	80,179 [80,179]	-	39,834	273,276
-일반출자금(460-01)	170,427	170,427	152,306 (152,306)	-	18,121	864,981	449,981	449,981	376,064 [376,064]	449,981	376,064 [376,064]	-	73,917	942,8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주거환경 조성 및 저소득 층의 주거안정 도모
- (통합시스템 개발) 공공사업자별 분산되어 있는 임대주택 입주모집 절차(모집공고, 청약 창구, 대기자명부 등)를 통합, 체계적인 임대주택 관리·공급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가목 :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국민주택의 건설)
-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의2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의 주요내용에 포함되어 추진

② 추진경위

- '20.03 주거복지 로드맵 2.0발표('21년부터 일부 공임주택 유형통합 모델 적용)
- '20.11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중형주택(전용 60~85㎡) 신규 도입 등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 '23.01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1~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88,438	272,753	1,070,374	1,216,141

- 건설규모 : '24년 3.5만호 신규승인 및 계속사업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무주택 저소득 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통합공공임대 출자	출자	LH	942,865	33~39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 재지원 등)
	보조	지자체	273,276		
	합계		1,216,141		

사 업 명						
(29)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1440-4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0	412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노후공공임대리모델링 및 서비스개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8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단일세대및세대통합)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김광림	성언수	유하진
		주거복지정책관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시설개선)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김도곤	류경진	이은비
		주거복지정책관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주거복지사 배치)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허경민	이민기	황정원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504	044-201-4740	044-201-4868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472,943	204,577	201,383	217,818	212,977	8,400	4.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2,943	472,943	472,943	-	-	204,577	201,383	201,383	201,382	201,383	201,382	-	1	212,977	
·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472,943	472,943	472,943	-	-	198,900	198,900	198,900	198,900	198,900	198,900	-	-	207,300	
-단일세대맞춤세대통합 리모델링	390,667	390,667	390,667	-	-	132,600	132,600	132,600	132,600	132,600	132,600	-	-	132,600	
-영구임대 시설개선	50,500	50,500	50,500	-	-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	-	57,300	
-매입임대 시설개선	31,776	31,776	31,776	-	-	15,300	15,300	15,300	15,300	15,300	15,300	-	-	15,300	
-국민임대 시설개선	-	-	-	-	-	‘24년	신규	사업	-	-	-	-	-	2,100	
· 주거복지사배치	-	-	-	-	-	5,677	2,483	2,483	2,482	2,483	2,482	-	1	5,677	
-주거복지사배치	-	-	-	-	-	5,677	2,483	2,483	2,482	2,483	2,482	-	1	5,677	
○ 비목별 분류(합계)	472,943	472,943	472,943	-	-	204,577	201,383	201,383	201,382	201,383	201,382	-	1	212,977	
·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472,943	472,943	472,943	-	-	198,900	198,900	198,900	198,900	198,900	198,900	-	-	207,300	
- 자치단체 자본 보조(330-03)	39,673	39,673	39,673	-	-	23,400	35,804	35,804	35,804	35,804	35,804	-	-	41,500	
- 일반출자금 (460-01)	433,270	433,270	433,270	-	-	175,500	163,096	163,096	163,096	163,096	163,096	-	-	165,800	
· 주거복지사배치	-	-	-	-	-	5,677	5,677	2,483	2,482	2,483	2,482	-	1	5,677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3,920	3,920	2,483	2,482	2,483	2,482	-	1	3,920	
- 지자체경상보조 (330-01)	-	-	-	-	-	1,757	1,757	-	-	-	-	-	-	1,7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영구임대 소형평형 두 채를 통합(26→52㎡)하는 세대통합과 한 세대를 전면 개선하는 단일세대 리모델링으로 추진
- (영구임대 시설개선) 노후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결로·소음방지 성능등급 준수 등과 관련된 시설 개보수
- (국민임대 시설개선) 노후 국민임대 주택의 공용부위의 품질 개선 및 입주자 안전 강화 등 주거환경 종합개선 추진
- (매입임대 시설개선) 취약계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세대 전용·공용 부위 패시브·액티브 에너지시설보강 및 입주민체감형 시설개선공사 실시

○ 주거복지사배치

- 영구임대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전담 배치하여 돌봄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맞춤형 상담·지원, 지역자원 연계등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시기금법 제9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② 추진경위

- '20.03 주거복지 로드맵 2.0발표(주거복지 혜택확대 내용 포함)
- 국정과제(약속02-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하여 노후공공임대 질적 개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5,950	364,535	472,943	204,577	212,977

- 기타 : '24년 31.7만호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및 LH
- 사업 수혜자 : 노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노후공임주택 리모델링	출자	지자체, LH	207,300	50 ~ 60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주거복지사 배치	보조	지자체, LH	5,677	50 ~ 80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합계			212,977		

사 업 명						
(30) 주택도시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 반환금(8910-89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0	891
명칭	기금간거래(전출금)	기금전출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 반환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주택도시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 반환금	국 토 교 통 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김광림	곽상훈	임건혁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39	044-201-4519	044-201-336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반환금	-	-	-	37,621	37,621	-	순증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 기능별 분류(계)	-	-	-	-	-	-	-	-	-	-	-	-	-	37,621
· 복권기금으로의 반환금	-	-	-	-	-	-	-	-	-	-	-	-	-	37,621
○ 비목별 분류(계)	-	-	-	-	-	-	-	-	-	-	-	-	-	37,621
· 예비비 및 기타 (710)	-	-	-	-	-	-	-	-	-	-	-	-	-	37,6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부내부지출인 복권기금 정산에 따라 원리금 상환 자금소요 발생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3호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제1항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단위 :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92	-	-	-	37,62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내부지출 /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사 업 명
(31) 사학진흥기금 예탁 (9002-9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2	90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사학진흥기금예탁 (주택도시기금)	예탁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3예산 시 소관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학진흥기금 예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거복지정책과	김광림	곽상훈	김태근
	사업시행주체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39	044-201-4513	044-201-4542
		한국사학진흥재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예탁금	83,728	70,733	86,871	86,871	16,138	22.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예산
	예산액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이월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3,728	83,728	83,728 [83,728]	-	-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	-	86,871
· 사학진흥기금 예탁	83,728	83,728	83,728 [83,728]	-	-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	-	86,871
○ 비목별 분류(합계)	83,728	83,728	83,728 [83,728]	-	-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	-	86,871
· 기금예탁금(480-03)	83,728	83,728	83,728 [83,728]	-	-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	-	86,87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3,728	83,728	83,728 [83,728]	-	-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	-	86,871
· 예탁금	83,728	83,728	83,728 [83,728]	-	-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	-	86,871
-기금예탁금(480-03)	83,728	83,728	83,728 [83,728]	-	-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70,733]	-	-	86,8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예탁금) 기숙사비가 저렴한 양질의 행복기숙사(사립·연합) 건설 지원을 통한 대학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 및 높은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사학진흥기금에 예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자금의 기금 예탁)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제26조(차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1.12.7 : 서민주거안정 대책(12.7대책) 발표

- '12. 4. : 물가관계장관회의(사립대학교 공공기숙사 지원)
- '12. 7. : 물가관계장관회의(대학연합기숙사 지원)
- '13.12. : 물가관계차관회의(공공기숙사 지원을 용자→예탁방식으로 변경)
- '17. 8 : 새정부 국정과제 확정·발표
 - ※ 국정과제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기숙사확대(5만명))
- '18. 1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인하(2.0%→1.5%)
- '18. 7 : “함께 나누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이야기” 개최
 - ※ (VIP) '19년~'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5천호) 추가 공급 발표
- '19. 1 : 기숙사형 청년주택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52,885	107,350	83,728	70,733	86,871

- 기타: '24년 기준 869억원, 연 2,000명 수준의 기숙사 건립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예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 용자대상자 :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 학교 및 기숙사특수목적법인(SPC)
 - 정책수혜자 : 대학생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학진흥 기금 예탁	용자	한국사학 진흥재단	86,871	이자율 연 1.5% (3년 거치 27년 상환)	-

사 업 명						
(3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9003-9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3	91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공공자금관리 기금(총괄계정) 예탁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성배 044-201-3337	정태현 044-201-3339	진주형 044-201-3346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예탁금	15,077,132	14,345,497	14,345,497	10,023,692	10,278,692	△4,066,805	△28.3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330,000	15,077,132	15,077,132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	10,278,692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금	11,330,000	15,077,132	15,077,132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	10,278,692
○ 비목별 분류(합계)	11,330,000	15,077,132	15,077,132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	10,278,692
· 기금예탁금(480-03)	11,330,000	15,077,132	15,077,132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	10,278,69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330,000	15,077,132	15,077,132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	10,278,692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금	11,330,000	15,077,132	15,077,132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	10,278,692
- 기금예탁금(480-03)	11,330,000	15,077,132	15,077,132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14,345,497		-	10,278,69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정부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4~계속
- 사업시행방법 : 예탁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사 업 명						
(33)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예수원금상환(9110-9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100	9110	911
명칭	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원금상환(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예수원금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 기금(융자계정) 예수원금상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관	전성배	정태현	진주형
		주택기금과	044-201-3337	044-201-3339	044-201-3346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상환지출	6,220	4,886	4,887	4,886	4,886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 획 액 (수 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제 외		이 월 예 상 액	불 용 예 상 액	
						당 초	수 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 기능별 분류(합계)	6,220	6,220	6,220	-	0	4,886	4,887	4,887	4,887	4,887	4,887	-	-	4,886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예수원금상환	6,220	6,220	6,220	-	0	4,886	4,887	4,887	4,887	4,887	4,887	-	-	4,886
○ 비목별 분류(합계)	6,220	6,220	6,220	-	0	4,886	4,887	4,887	4,887	4,887	4,887	-	-	4,886
· 예수금원금상환 (510-04)	6,220	6,220	6,220	-	0	4,886	4,887	4,887	4,887	4,887	4,887	-	-	4,88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220	6,220	6,220	-	0	4,886	4,887	4,887	4,887	4,887	4,887	-	-	4,886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예수원금상환	6,220	6,220	6,220	-	0	4,886	4,887	4,887	4,887	4,887	4,887	-	-	4,886
- 예수금원금상환 (510-04)	6,220	6,220	6,220	-	0	4,886	4,887	4,887	4,887	4,887	4,887	-	-	4,8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거 주택도시기금이 재정융자 특별회계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예수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사 업 명						
(34)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예수이자상환(9201-9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01	921
명칭	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 이자상환(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관	전성배	정태현	진주형
		주택기금과	044-201-3337	044-201-3339	044-201-3346
공공자금관리 기금(융자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상환지출	346	237	324	237	237	-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78	378	346	-	32	237	324	324	323	324	323	-	1	237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예수이자상환	378	378	346	-	32	237	324	324	323	324	323	-	1	237
○ 비목별 분류(합계)	378	378	346	-	32	237	324	324	323	324	323	-	1	237
· 예수금이자(510-05)	378	378	346	-	32	237	324	324	323	324	323	-	1	23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78	378	346	-	32	237	324	324	323	324	323	-	1	237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예수이자상환	378	378	346	-	32	237	324	324	323	324	323	-	1	237
- 예수금이자(510-05)	378	378	346	-	32	237	324	324	323	324	323	-	1	2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과거 주택도시기금이 재정융자 특별회계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상환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예수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사 업 명						
(35) 도시계정 전출(9310-99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300	9310	999
명칭	계정간거래 (전출금)	주택계정에서도시계정으로의 전출금	도시계정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도시계정 전출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관	전성배	정태현	진주형
		주택기금과	044-201-3337	044-201-3339	044-201-3346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전출금등	590,663	537,998	537,998	151,095	151,095	△386,903	△71.9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90,663	590,663	590,663	-	-	537,998	537,998	537,998	537,998	537,998	537,998	-	-	151,095
· 도시계정 전출	590,663	590,663	590,663	-	-	537,998	537,998	537,998	537,998	537,998	537,998	-	-	151,095
○ 비목별 분류(합계)	590,663	590,663	590,663	-	-	537,998	537,998	537,998	537,998	537,998	537,998	-	-	151,095
· 계정간전출금 (610-04)	590,663	590,663	590,663	-	-	537,998	537,998	537,998	537,998	537,998	537,998	-	-	151,09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90,663	590,663	590,663	-	-	537,998	537,998	537,998	537,998	537,998	537,998	-	-	151,095
· 도시계정 전출	590,663	590,663	590,663	-	-	537,998	537,998	537,998	537,998	537,998	537,998	-	-	151,095
- 계정간전출금 (610-04)	590,663	590,663	590,663	-	-	537,998	537,998	537,998	537,998	537,998	537,998	-	-	151,0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활성화 추진을 위한 주택계정에서 도시계정으로의 전출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5호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전출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사 업 명 (36) 통화금융기관예치(주택) (9701-971)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주택도시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주택)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통화금융기관 예치(주택)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관	전성배	백두진	손은수
		주택기금과	044-201-3337	044-201-3340	044-201-3344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147,607	1,470,815	1,470,815	147,607	147,607	△1,323,208	△90.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56,540	1,056,540	147,607	-	-	1,470,815	1,470,815	1,470,815	584,278	1,470,815	584,278		886,537	147,607
· 통화금융기관 예치(주택)	1,056,540	1,056,540	147,607	-	-	1,470,815	1,470,815	1,470,815	584,278	1,470,815	584,278		886,537	147,607
○ 비목별 분류(합계)	1,056,540	1,056,540	147,607	-	-	1,470,815	1,470,815	1,470,815	584,278	1,470,815	584,278		886,537	147,607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2)	1,056,540	1,056,540	147,607	-	-	1,470,815	1,470,815	1,470,815	584,278	1,470,815	584,278		886,537	147,60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56,540	1,056,540	147,607	-	-	1,470,815	1,470,815	1,470,815	584,278	1,470,815	584,278		886,537	147,607
· 통화금융기관 예치(주택)	1,056,540	1,056,540	147,607	-	-	1,470,815	1,470,815	1,470,815	584,278	1,470,815	584,278		886,537	147,607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2)	1,056,540	1,056,540	147,607	-	-	1,470,815	1,470,815	1,470,815	584,278	1,470,815	584,278		886,537	147,6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은 조성한 자금을 융자사업, 차입금 상환 등에 운용하고 남은 잉여 자금으로 지급준비자금 성격
- 자금의 운용은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 후 투자원본의 안정성·유동성 및 수익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으로 분산 투자하여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4항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예치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사 업 명 (37) 비통화금융기관예치(주택) (9701-972)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2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주택도시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주택)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비통화금융 기관예치(예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관	전성배	백두진	손은수
		주택기금과	044-201-3337	044-201-3340	044-201-3344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25,869,299	27,903,210	26,018,598	27,706,589	27,511,373	△391,837	△1.4%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790489	8794544	25869299	-	-	27903210	26018598	26018598	19823990	26018598	19823990	-	-	27511373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주택)	14790489	8794544	25869299	-	-	27903210	26018598	26018598	19823990	26018598	19823990	-	-	27511373
○ 비목별 분류(합계)	14790489	8794544	25869299	-	-	27903210	26018598	26018598	19823990	26018598	19823990	-	-	27511373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3)	14790489	8794544	25869299	-	-	27903210	26018598	26018598	19823990	26018598	19823990	-	-	2751137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4790489	8794544	25869299	-	-	27903210	26018598	26018598	19823990	26018598	19823990	-	-	27511373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주택)	14790489	8794544	25869299	-	-	27903210	26018598	26018598	19823990	26018598	19823990	-	-	27511373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3)	14790489	8794544	25869299	-	-	27903210	26018598	26018598	19823990	26018598	19823990	-	-	275113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성한 자금 중 융자사업, 차입금 상환 등에 운용하고 남은 잉여자금으로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
 -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자금(MMF, 전담운용기관, 연기금투자상품)으로 구성
- 사업비 지출을 위한 유동성 확보와 운용 수익률 제고를 동시 달성하기 위해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으로 분산 투자하여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4항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유가증권매입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사 업 명 (38) 기타여유자금운용(주택) (9701-97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3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주택도시기금)	기타여유자금운용(주택)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타여유자금 운용(주택)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관	전성배	백두진	손은수
		주택기금과	044-201-3337	044-201-3340	044-201-3344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예비비 및 기타	15,339	13,320	26,588	14,990	14,990	1,670	12.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 획 액 (수 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520	17,784	15,339	-	-	13,320	26,588	26,588	20,184	26,588	20,184	-	-	14,990
· 기타여유자금 운용(주택)	10,520	17,784	15,339	-	-	13,320	26,588	26,588	20,184	26,588	20,184	-	-	14,990
○ 비목별 분류(합계)	10,520	17,784	15,339	-	-	13,320	26,588	26,588	20,184	26,588	20,184	-	-	14,990
· 반환금 및 손실금 (710-03)	10,520	17,784	15,339	-	-	13,320	26,588	26,588	20,184	26,588	20,184	-	-	14,99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520	17,784	15,339	-	-	13,320	26,588	26,588	20,184	26,588	20,184	-	-	14,990
· 기타여유자금 운용(주택)	10,520	17,784	15,339	-	-	13,320	26,588	26,588	20,184	26,588	20,184	-	-	14,990
- 반환금 및 손실금 (710-03)	10,520	17,784	15,339	-	-	13,320	26,588	26,588	20,184	26,588	20,184	-	-	14,9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타여유자금운용은 공탁금, 특수채권회수 위임수수료 및 관리비용 등 지출을 위한 자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사 업 명 (39)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9850-980)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800	9850	980
명칭	차입금등원금상환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주택도시기금)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관	전성배	백두진	손은수
		주택기금과	044-201-3337	044-201-3340	044-201-3344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상환지출	19,037,001	12,545,300	15,516,681	13,647,300	13,647,300	1,102,000	8.8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011900	2123791	19037001	-	1,200,890	125630	15516681	15516681	15209847	15516681	15209847	-	306,834	13647300
·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상환	15011900	2123791	19037001	-	1,200,890	125630	15516681	15516681	15209847	15516681	15209847	-	306,834	13647300
○ 비목별 분류(합계)	15011900	2123791	19037001	-	1,200,890	125630	15516681	15516681	15209847	15516681	15209847	-	306,834	13647300
· 민간예수금원금 상환(510-08)	15011900	2123791	19037001	-	1,200,890	125630	15516681	15516681	15209847	15516681	15209847	-	306,834	136473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011900	2123791	19037001	-	1,200,890	125630	15516681	15516681	15209847	15516681	15209847	-	306,834	13647300
·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상환	15011900	2123791	19037001	-	1,200,890	125630	15516681	15516681	15209847	15516681	15209847	-	306,834	13647300
- 민간예수금원금 상환(510-08)	15011900	2123791	19037001	-	1,200,890	125630	15516681	15516681	15209847	15516681	15209847	-	306,834	13647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재원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으로부터 유입된 자금 중 청약저축 해지에 따라 상환하는 원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1항제2호

구 분	이 율	기 간	내 용	법적근거
○ 청약저축	2년이상 : 2.8% 2년미만 : 2.5% 1년미만 : 2.0%	당첨시까지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저축 (입주자선정자격부여)	주택법 제75조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원금상환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 사업 수혜자 : 청약저축 가입자

사 업 명 (40) 국공채원금상환 (9860-980)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800	9860	980
명칭	차입금등원금상환	국공채원금상환 (주택도시기금)	국공채원금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공채 원금상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정책관	전성배	백두진	손은수
		주택기금과	044-201-3337	044-201-3340	044-201-3344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계획액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상환지출	14,445,487	15,078,400	15,175,191	15,383,000	15,383,000	304,600	2.0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277,000	14,472,342	14,445,487	-	26,855	15,078,400	15,175,191	15,175,191	13,897,772	15,175,191	13,897,772	-	1,277,419	15,383,000
· 국공채원금상환	14,277,000	14,472,342	14,445,487	-	26,855	15,078,400	15,175,191	15,175,191	13,897,772	15,175,191	13,897,772	-	1,277,419	15,383,000
○ 비목별 분류(합계)	14,277,000	14,472,342	14,445,487	-	26,855	15,078,400	15,175,191	15,175,191	13,897,772	15,175,191	13,897,772	-	1,277,419	15,383,000
· 국내차입금상환 (510-01)	14,277,000	14,472,342	14,445,487	-	26,855	15,078,400	15,175,191	15,175,191	13,897,772	15,175,191	13,897,772	-	1,277,419	15,383,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4,277,000	14,472,342	14,445,487	-	26,855	15,078,400	15,175,191	15,175,191	13,897,772	15,175,191	13,897,772	-	1,277,419	15,383,000
· 국공채원금상환	14,277,000	14,472,342	14,445,487	-	26,855	15,078,400	15,175,191	15,175,191	13,897,772	15,175,191	13,897,772	-	1,277,419	15,383,000
- 국내차입금상환 (510-01)	14,277,000	14,472,342	14,445,487	-	26,855	15,078,400	15,175,191	15,175,191	13,897,772	15,175,191	13,897,772	-	1,277,419	15,383,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으로부터 유입된 자금 중 채권만기 도래 등에 따라 상환하는 원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4호

구 분	이 율	기 간	내 용
○ 제1종 국민주택채권	연 1.30%	5년	인.허가, 등기, 등록시 첨가발행
○ 제2종 국민주택채권	연 0%	10년	공공택지내의 85㎡ 초과 분양 아파트에 대해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

□ 주요내용

- 사업시행방법 : 원금상환
- 사업시행주체 : 직접 수행
- 사업 수혜자 : 국민주택채권 매입자

사 업 명
(41) 도시재생사업지원 (1510-99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10	992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지원	도시재생사업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도시재생 사업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토도시실	유병수	김승욱	곽준홍
		도시재생과	044-201-4903	044-201-4949	044-201-490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도시재생사업지원	16,067	15,394	9,112	9,112	△967	△6.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이월액	제외			
○ 기능별 분류(합계)	17,594	20,975	16,068 [16,068]	3,119	1,788	15,394	18,513	13,549 (13,549)	15,394	12,623 (12,623)	2,209	2,755	9,112
· 도시재생사업지원	17,594	20,975	16,067 [16,068]	3,119	1,788	15,394	18,513	13,549 (13,549)	15,394	12,623 (12,623)	2,209	2,755	9,112
○ 비목별 분류(합계)	17,594	20,975	16,068 [16,067]	3,119	1,788	15,394	18,513	13,549 (13,549)	15,394	12,623 (12,623)	2,209	2,755	9,112
· 일반수용비(210-01)	378	378	370 [370]	-	8	375	75	74 (74)	75	74 (74)	-	1	10
· 국내여비(220-01)	105	105	25 [25]	-	80	107	107	77 (77)	107	77 (77)	-	30	20
· 국외업무여비(220-02)	47	47	26 [26]	-	21	47	47	33 (33)	47	33 (33)	-	14	30
· 사업추진비(240-01)	38	38	38 [38]	-	-	39	39	38 (38)	39	38 (38)	-	1	39
· 정책연구비(260-02)	400	510	424 [424]	77	8	400	777	625 (625)	700	547 (547)	137	15	-
· 민간위탁사업비(300-02)	16,626	19,897	15,184 [15,184]	3,042	1,671	14,426	17,468	12,702 (12,702)	14,426	11,854 (11,854)	2,072	2,694	9,01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594	20,975	16,067 [16,067]	3,119	1,788	15,394	18,513	13,549 (13,549)	15,394	12,623 (12,623)	2,209	2,755	9,112
· 도시재생사업지원	17,594	20,975	16,067 [16,067]	3,119	1,788	15,394	18,513	13,549 (13,549)	15,394	12,623 (12,623)	2,209	2,755	9,112
· 일반수용비(210-01)	378	378	370 [370]	-	8	375	75	74 (74)	75	74 (74)	-	1	10
· 국내여비(220-01)	105	105	25 [25]	-	80	107	107	77 (77)	107	77 (77)	-	30	20
· 국외업무여비(220-02)	47	47	26 [26]	-	21	47	47	33 (33)	47	33 (33)	-	14	30
· 사업추진비(240-01)	38	38	38 [38]	-	-	39	39	38 (38)	39	38 (38)	-	1	39
- 정책연구비(260-02)	400	510	424 [424]	77	8	400	777	625 (625)	700	547 (547)	137	15	-
- 민간위탁사업비(300-02)	16,626	19,897	15,183 [15,183]	3,042	1,671	14,426	17,468	12,702 (12,702)	14,426	11,854 (11,854)	2,072	2,694	9,0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시재생사업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및 계획변경 등 관리, 지자체 컨설팅,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교육 실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및 컨설팅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관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5.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7.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도시재생사업>

- 기존 도심 및 쇠퇴 도시지역의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3.6.4)
- '14.5월 13곳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경제기반형 2, 근린재생형 11)
- '16.4월 33곳의 2차 도시재생 사업지역 지정(경제기반형 5, 근린재생형 28)
 - * 2016 회계연도부터 기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으로 예산 편성
- '17.7월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신설(5개 부서)
- '17.12월 '도시재생 시범사업' 68곳* 선정(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16곳, 일반근린형 15곳, 중심시가지형 19곳, 경제기반형 1곳
- '18.3월 향후 5년간의 도시재생 정책방향을 담은 '도시재생 로드맵' 발표
- '18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100곳* 선정(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 포항 특별재생지역 1곳

- '19.4월 '도시재생 신규사업' 22곳* 선정(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 우리동네살리기 5곳, 주거지지원형 4곳, 일반근린형 6곳, 중심시가지형 7곳
- '19.10월 '도시재생 신규사업' 76곳* 선정(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 우리동네살리기 13곳, 주거지지원형 14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3곳, 경제기반형 2곳
- 도시재생 新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19.8)
 - * 공공기관 중심의 거점형사업(혁신지구·총괄관리사업자 사업) 도입
- 도시재생 '신규제도 시범사업' 18곳* 선정('19.12)
 - * 인정사업 12곳, 총괄사업관리자 2곳, 혁신지구 4곳
- '도시재생사업' 117곳* 선정('20.9, 11, 12)
 - * 경제1, 중심1, 일반33, 주거지4, 우리동네10, 혁신2, 총괄22, 인정44곳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중복절차 생략 등 법 개정('20.12)
 - *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면제, ② 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생략, ③ 특위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 지방위 심의 생략
- '도시재생사업 87곳* 선정('21.4~12)
 - * 중심4, 일반22, 주거지10, 우리동네7, 혁신3, 총괄8, 인정33곳
- '22.7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수립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유형 개편(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및 신규 선정 규모 축소(매년 100여곳 → 40여곳)
- '22.9월 부진사업지에 대한 국가지원사항 구조조정(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22.12월 도시재생 신규사업 26곳 선정(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 우리동네살리기 10곳, 특화재생형 15곳, 경제거점(혁신지구) 1곳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20,607	17,699	17,594	15,394	9,11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도시재생지원기구 위탁 등)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2) 도시재생지원(융자) (1510-99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10	997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지원	도시재생지원(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총사업비 50% 이내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도시재생지원 (융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토도시실	정진훈	안연진	남혜림
		도시정책과	044-201-3706	044-201-3710	044-201-3719
	사업시행주체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혁신기획처	강주용 팀장	051-998-2271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도시재생지원(융자)	150,062	144,490	230,090	131,000	131,000	△13,490	△9.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이월액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0,117	150,117	150,062 [150,062]	-	55	144,4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	-	131,000
· 도시재생지원(융자)	150,117	150,117	150,062 [150,062]	-	55	144,4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	-	131,000
○ 비목별 분류(합계)	150,117	150,117	150,062 [150,062]	-	55	144,4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	-	131,00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50,117	150,117	150,062 [150,062]	-	55	144,4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	-	131,000
○ 기능·비목별 분 류(합계)	150,117	150,117	150,062 [150,062]	-	55	144,4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	-	131,000
· 도시재생지원(융자)	150,117	150,117	150,062 [150,062]	-	55	144,4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	-	131,00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150,117	150,117	150,062 [150,062]	-	55	144,4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230,090]	-	-	131,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시재생지원(융자)) 쇠퇴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기반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 사업시행자에게 기금을 융자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 제2의2호

제9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융자

② 추진경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3. 6월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4~'23) 국무회의 의결 : '13. 12월
-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경제기반형 2개, 근린재생형 11개) : '14. 5월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시행 : '15. 7월
- 도시재생사업 일반지역 선정 : '16. 4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승인·변경(16개 지역) : '17. 9월
-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68곳) : '17. 12월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 '18. 3월
-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입 : '19. 11월
-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향 발표 : '22.7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70,950	223,450	150,117	144,490	131,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LH, 지방공사, 민간 등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 사업 수혜자 :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도시재생 지원(융자)	융자	지자체, LH, 지방공사, 민간 등	131,000	총사업비 50% 이내	주택도시보증법 제9조제2항제2호, 제2의2호

사 업 명						
(4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520-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본부	도시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20	301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기능증진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	-	총사업비 50~7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공공주택추진본부	김형철	박현정	이재연
		도심주택공급협력과	044-201-4937	044-201-4941	044-201-494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용자금	341,802	467,600	489,100	413,600	413,600	0	△1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2.12월말)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 기능별 분류(합계)	317,500 (31,800)	349,300	341,802 [341,802]	-	7,498	467,600	21,500	489,100	488,073 [488,073]	489,100	488,073 [488,073]	-	1,027	413,600
· 가로주택정비사업	267,500 (43,900)	311,400	306,121 [306,121]	-	5,279	449,600	25,844	475,444	474,546 [474,546]	475,444	474,546 [474,546]	-	898	402,100
· 자율주택정비사업	50,000 (12,100)	37,900	35,681 [35,681]	-	2,219	14,000	-744	13,256	13,255 [13,255]	13,256	13,255 [13,255]	-	1	4,700
· 이차보전지원	-	-	-	-	-	4,000	-3,600	400	272 [272]	400	272 [272]	-	128	6,800
○ 비목별 분류(합계)	317,500 (31,800)	349,300	341,802 [341,802]	-	7,498	467,600	21,500	489,100	488,073 [488,073]	489,100	488,073 [488,073]	-	1,027	413,600
· 기타민간 용자금(450-04)	317,500 (31,800)	349,300	341,802 [341,802]	-	7,498	463,600	21,500	488,700	487,801 [487,801]	488,700	487,801 [487,801]	-	899	406,800
· 이차보전금 (320-05)	-	-	-	-	-	4,000	-3,600	400	272 [272]	400	272 [272]	-	128	6,8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17,500 (31,800)	349,300	341,802 [341,802]	-	7,498	467,600	21,500	489,100	488,073 [488,073]	489,100	488,073 [488,073]	-	1,027	413,600
· 가로주택정비사업	267,500 (43,900)	311,400	306,121 [306,121]	-	5,279	449,600	25,844	475,444	474,546 [474,546]	475,444	474,546 [474,546]	-	898	402,100
-기타민간 용자금(450-04)	267,500 (43,900)	311,400	306,121 [306,121]	-	5,279	449,600	25,844	475,444	474,546 [474,546]	475,444	474,546 [474,546]	-	898	402,100
· 자율주택 정비사업	50,000 (12,100)	37,900	35,681 [35,681]	-	2,219	14,000	-744	13,256	13,255 [13,255]	13,256	13,255 [13,255]	-	1	4,700
-기타민간 용자금(450-04)	50,000 (12,100)	37,900	35,681 [35,681]	-	2,219	14,000	-744	13,256	13,255 [13,255]	13,256	13,255 [13,255]	-	1	4,700
· 이차보전지원	-	-	-	-	-	4,000	-3,600	400	272 [272]	400	272 [272]	-	128	6,800
· 이차보전금(320-05)	-	-	-	-	-	4,000	-3,600	400	272 [272]	400	272 [272]	-	128	6,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단독+공동 포함) 20세대 이상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또는 공공참여(공공단독) 사업지 경우 2만㎡까지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단독주택 10호 또는 연립·다세대주택(단독+연립·다세대 포함) 20채 미만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지역 내 시행 가능

- (이차보전)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부(최대 2%)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정책금리(1.9%(공공)~2.2%(민간)) - 협약금리(CD금리+1.8%(공공)~2.1%(민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용자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② 추진경위

-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관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

- '17.02: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 (기금용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7.06: 주택도시기금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예산 반영(60억)

- '22.04: 20대 대통령 공약

*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활용”

○ 5년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10만호 공급

- '22.04: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 * (국정과제 07번)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 (실천과제1) 250만호+@ 공급 로드맵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로드맵, 공급촉진) 소규모정비 활성화 등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추진

- '22.08: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 (주택공급 로드맵) 반영

- *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사업비 기금용자가 실제 수요보다 부족하여 추가지원 필요
 - * (사업비 소요, '22) 약 9,000억원 vs. ('22년 예산) 2,675억원
 - (개선)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 '23.0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반영

- *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
 -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용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37,500	317,500	317,500	467,600	413,6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등
- 사업시행주체 : 조합, 공공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구역 거주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가로주택 정비사업	용자	조합,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	402,100	총사업비 50% 이내 (공적임대 공급시 70%)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자율주택 정비사업	용자	조합,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	4,700	총사업비 50% 이내 (공적임대 공급시 70%)	
이차보전	용자	조합,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	6,800	최대 2%p	

사 업 명						
(44) 이차보전지원 (1520-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57	26	주택토지실	주택	080	088
명칭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20	302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기능증진지원	이차보전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3예산 시 소관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이차보전 지원	국토교통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박용선	오원택	양경동
		주택정비과	044-201-3383	044-201-3385	044-201-339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정부안	확정(B)		
이차보전지원	-	2,000	2,000	2,00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2,000	650	648 (648)	650	648 (648)	-	2	2,000
· 이차보전지원	-	-	-	-	-	2,000	650	648 (648)	650	648 (648)	-	2	2,0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2,000	650	648 (648)	650	648 (648)	-	2	2,000
· 이차보전금 (320-05)	-	-	-	-	-	2,000	650	648 (648)	650	648 (648)	-	2	2,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2,000	650	648 (648)	650	648 (648)	-	2	2,000
· 이차보전지원	-	-	-	-	-	2,000	650	648 (648)	650	648 (648)	-	2	2,000
-이차보전금 (320-05)	-	-	-	-	-	2,000	650	648 (648)	650	648 (648)	-	2	2,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사업이 어려운 곳에서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사업비·이주비 용자 일부 지원으로 사업속도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용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② 추진경위

- '20. 05.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마련(공공재개발 도입)
- '21. 01. :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8곳)
- '21. 03. :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16곳)
- '21. 04. : 공공재개발 도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21. 07. :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3곳)
- '21. 10. : 통합공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1곳)
- '22. 03. : 공공재개발 추진 시 정부의 사업비 지원 공약(03-02-005)
- '22. 08. :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8곳)
- '22. 08. :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1곳)
- '22. 11. :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2곳)
- '23. 05. :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지원 협약 체결(HUG-LH·SH·GH)
- '23. 07. : 공공재개발 이차보전료 1차 집행(258백만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	-	-	2,000	2,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이차보전지원)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차보전 지원	-	한국토지주 택공사 등	2,000	이차보전 최대 2%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사 업 명						
(45)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1520-99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20	992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기능증진지원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국토교통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총사업비 50%~70% 이내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토정책관	김기용	오지민	김도연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4	044-201-3663	044-201-3681
	사업시행주체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혁신기획처	송다은	051-998-2287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노후산단재생 지원(융자)	60,000	75,000	95,184	45,000	45,000	△30,000	△4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000	60,000	60,000 [60,000]	-	-	75,000	95,184	95,184	95,184 [95,184]	95,184	95,184 [95,184]	-	-	45,000
· 노후산단재생지원 (융자)	60,000	60,000	60,000 [60,000]	-	-	75,000	95,184	95,184	95,184 [95,184]	95,184	95,184 [95,184]	-	-	45,000
○ 비목별 분류(합계)	60,000	60,000	60,000 [60,000]	-	-	75,000	95,184	95,184	95,184 [95,184]	95,184	95,184 [95,184]	-	-	45,00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60,000	60,000	60,000 [60,000]	-	-	75,000	95,184	95,184	95,184 [95,184]	95,184	95,184 [95,184]	-	-	45,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도시친화형 융·복합 산단 플랫폼 조성 및 노후산단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개발형 및 기반시설형, 리모델링형에 대한 융자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

제9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
 - 투자 또는 융자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 추진경위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융자사업 근거 마련('18.3.13 공포, 시행 9.14)
 - *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투자·융자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19. 1 : 복합개발형, 기반시설형 융자 실시
- '20. 3 : 리모델링형 융자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50,000	40,000	60,000	75,000	45,0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공기업, 민간, 리츠 등 산단 재생사업 시행자
- 사업 수혜자 : 산단 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노후산단 재생지원 (용자)	용자	지자체, 공기업, 민간, 리츠 등 산단 재생사업 시행자	45,000	총사업비 70% 이내 (복합개발형 50%)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사 업 명						
(46) 도시재생씨앗융자(1520-99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20	994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도시기능증진지원	도시재생씨앗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총사업비 50% 이내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도시재생 씨앗융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토도시실	정진훈	안연진	남혜림
		도시정책과	044-201-3706	044-201-3710	044-201-3719
	사업시행주체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혁신기획처	강주용 팀장	051-998-2271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도시재생씨앗융자	44,079	59,928	41,094	40,000	40,000	△19,928	△3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5,612	53,812	44,079 [44,079]	-	9,733	59,928	41,094	41,094	39,218 [39,218]	41,094	39,218 [39,218]	-	1,877	40,000
· 도시재생씨앗융자	85,612	53,812	44,079 [44,079]	-	9,733	59,928	41,094	41,094	39,218 [39,218]	41,094	39,218 [39,218]	-	1,877	40,000
○ 비목별 분류(합계)	85,612	53,812	44,079 [44,079]	-	9,733	59,928	41,094	41,094	39,218 [39,218]	41,094	39,218 [39,218]	-	1,877	40,00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85,612	53,812	44,079 [44,079]	-	9,733	59,928	41,094	41,094	39,218 [39,218]	41,094	39,218 [39,218]	-	1,877	40,000
○ 기능·비목별 분 류(합계)	85,612	53,812	44,079 [44,079]	-	9,733	59,928	41,094	41,094	39,218 [39,218]	41,094	39,218 [39,218]	-	1,877	40,000
· 도시재생씨앗융자	85,612	53,812	44,079 [44,079]	-	9,733	59,928	41,094	41,094	39,218 [39,218]	41,094	39,218 [39,218]	-	1,877	40,000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85,612	53,812	44,079 [44,079]	-	9,733	59,928	41,094	41,094	39,218 [39,218]	41,094	39,218 [39,218]	-	1,877	4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시재생씨앗융자) 쇠퇴한 도시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협업공간, 창업시설, 임대상가 등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

제9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② 추진경위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시행 : '15. 7월
- 도시재생사업 일반지역 선정 : '16. 4월
- 수요자중심형 기금 융자 상품 출시 : '17. 9월
- 사업명칭 변경(도시재생씨앗융자) : '21. 1월
-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향 발표 : '22.7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30,600	196,515	85,612	59,928	4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개인, 법인,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 사업 수혜자 : 도시재생사업 지역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 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도시재생 씨앗융자	융자	지방공사,지자체, 조합 등 기금 지원대상 개인 및 법인	40,000	총사업비 70% 이내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

사 업 명						
(47) 위탁수수료(도시)(1530-6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0	600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위탁관리	위탁수수료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위탁수수료 (도시)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토도시실	정진훈	안연진	남혜림
		도시정책과	044-201-3706	044-201-3710	044-201-3719
	사업시행주체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혁신기획처	강주용 팀장	051-998-2271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위탁수수료 (도시)	3,592	3,511	3,511	3,380	3,380	△131	△3.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 획 액 (수 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제 외		이 월 예 상 액	불 용 예 상 액	
						당 초	수 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 기능별 분류(합계)	4,124	4,124	3,592 [3,592]	-	532	3,511	3,511	3,511	2,740 [2,740]	3,511	2,740 [2,740]	-	771	3,380
· 위탁수수료	4,124	4,124	3,592 [3,592]	-	532	3,511	3,511	3,511	2,740 [2,740]	3,511	2,740 [2,740]	-	771	3,380
○ 비목별 분류(합계)	4,124	4,124	3,592 [3,592]	-	532	3,511	3,511	3,511	2,740 [2,740]	3,511	2,740 [2,740]	-	771	3,380
· 일반수용비(210-01)	4,124	4,124	3,592 [3,592]	-	532	3,511	3,511	3,511	2,740 [2,740]	3,511	2,740 [2,740]	-	771	3,38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124	4,124	3,592 [3,592]	-	532	3,511	3,511	3,511	2,740 [2,740]	3,511	2,740 [2,740]	-	771	3,380
· 위탁수수료	4,124	4,124	3,592 [3,592]	-	532	3,511	3,511	3,511	2,740 [2,740]	3,511	2,740 [2,740]	-	771	3,380
· 일반수용비(210-01)	4,124	4,124	3,592 [3,592]	-	532	3,511	3,511	3,511	2,740 [2,740]	3,511	2,740 [2,740]	-	771	3,3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탁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출·용자 등 업무를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에 따라 법정수수료 등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 '15. 1월
- 「주택도시기금법」 및 하위법령 시행 : '15. 7월
-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 업무 위탁(주택도시보증공사 등) : '15. 7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124	4,124	4,124	3,511	3,38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기금 운용·관리 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8) 기타경비(도시)(1540-63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40	634
명칭	도시재생활성화	기금운영비	기타경비(도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타경비 (도시)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토도시실	정진훈	안연진	남혜림
		도시정책과	044-201-3706	044-201-3710	044-201-3719
	사업시행주체	해당없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기타경비(도시)	35	35	35	35	3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5	35	35 [35]	-	-	35	35	35	21 [21]	35	21 [21]	-	14	35
· 기타경비(도시)	35	35	35 [35]	-	-	35	35	35	21 [21]	35	21 [21]	-	14	35
○ 비목별 분류(합계)	35	35	35 [35]	-	-	35	35	35	21 [21]	35	21 [21]	-	14	35
· 일반수용비(210-01)	35	35	35 [35]	-	-	35	35	35	21 [21]	35	21 [21]	-	14	35
○ 기능·비목별 분 류(합계)	35	35	35 [35]	-	-	35	35	35	21 [21]	35	21 [21]	-	14	35
· 기타경비(도시)	35	35	35 [35]	-	-	35	35	35	21 [21]	35	21 [21]	-	14	35
· 일반수용비(210-01)	35	35	35 [35]	-	-	35	35	35	21 [21]	35	21 [21]	-	14	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타경비) 도시재생 정책 홍보비용 등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운용·관리를 위한 필수경비 지급

* 기금 운용·관리상 발생하는 최소한의 행정사무비,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 사용료 등 경직성 지출에 사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5호

제9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 '15. 1월
 - 「주택도시기금법」 및 하위법령 시행 : '15. 7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5	35	35	35	3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9) 통화금융기관예치금(도시)(9701-9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주택도시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도시)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토도시실	정진훈	안연진	남혜림
	도시정책과	044-201-3706	044-201-3710	044-201-3719	
	사업시행주체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혁신기획처	강주용 팀장	051-998-2271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도시)	9,813	4,788	4,788	10,000	10,000	5,212	108.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381	25,381	9,813 [9,813]	-	15,568	4,788	4,788	4,788	3,037 [3,037]	4,788	3,037 [3,037]	-	1,751	10,00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5,381	25,381	9,813 [9,813]	-	15,568	4,788	4,788	4,788	3,037 [3,037]	4,788	3,037 [3,037]	-	1,751	10,000
○ 비목별 분류(합계)	25,381	25,381	9,813 [9,813]	-	15,568	4,788	4,788	4,788	3,037 [3,037]	4,788	3,037 [3,037]	-	1,751	10,00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2)	25,381	25,381	9,813 [9,813]	-	15,568	4,788	4,788	4,788	3,037 [3,037]	4,788	3,037 [3,037]	-	1,751	10,000
○ 기능·비목별 분 류(합계)	25,381	25,381	9,813 [9,813]	-	15,568	4,788	4,788	4,788	3,037 [3,037]	4,788	3,037 [3,037]	-	1,751	10,00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5,381	25,381	9,813 [9,813]	-	15,568	4,788	4,788	4,788	3,037 [3,037]	4,788	3,037 [3,037]	-	1,751	10,00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2)	25,381	25,381	9,813 [9,813]	-	15,568	4,788	4,788	4,788	3,037 [3,037]	4,788	3,037 [3,037]	-	1,751	1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도시재생활성화 목적으로 조성하여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당해년말 잔액으로 표기

* 즉시 소요가 높은 사업대기자금을 MMDA(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일종) 계좌에 보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9조(기금의 용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및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공사 및 기금채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기금사무의 일부를 채위탁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3. 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 '15. 1월
- 「주택도시기금법」 및 하위법령 시행 : '15. 7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000	-	25,381	4,788	1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금융기관 예치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5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도시)(9701-9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	080	088
명칭					사회복지	주택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2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주택도시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토도시실	정진훈	안연진	남혜림
		도시정책과	044-201-3706	044-201-3710	044-201-3719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도시)	사업시행주체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혁신기획처	강주용 팀장	051-998-2271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도시)	908,200 (529,700)	270,832	163,732	899,965	899,965	629,133	232.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계 획
	계 획 액 (수 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제 외		이 월 예 상 액	불 용 예 상 액	
						당 초	수 정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510	19,510	908,200 [529,700]	-	-	270,832	163,732	163,732	911,183 [911,183]	163,732	911,183 [911,183]	-	-	899,965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9,510	19,510	908,200 [529,700]	-	-	270,832	163,732	163,732	911,183 [911,183]	163,732	911,183 [911,183]	-	-	899,965
○ 비목별 분류(합계)	19,510	19,510	908,200 [529,700]	-	-	270,832	163,732	163,732	911,183 [911,183]	163,732	911,183 [911,183]	-	-	899,965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3)	19,510	19,510	908,200 [529,700]	-	-	270,832	163,732	163,732	911,183 [911,183]	163,732	911,183 [911,183]	-	-	899,965
○ 기능·비목별 분류 (합 계)	19,510	19,510	908,200 [529,700]	-	-	270,832	163,732	163,732	911,183 [911,183]	163,732	911,183 [911,183]	-	-	899,965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9,510	19,510	908,200 [529,700]	-	-	270,832	163,732	163,732	911,183 [911,183]	163,732	911,183 [911,183]	-	-	899,965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470-03)	19,510	19,510	908,200 [529,700]	-	-	270,832	163,732	163,732	911,183 [911,183]	163,732	911,183 [911,183]	-	-	899,9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도시재생활성화 목적으로 조성하여 비통화금융기관*에 당해년도에 예치한 누적액으로 표기

* 현금성 자금(만기 3개월 미만)과 유동성 자금(만기 1년 미만)으로 MMF 등에 예치하여 운용하며 당해 예치한 누적액으로 표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9조(기금의 용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및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공사 및 기금채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기금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3. 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 '15. 1월
- 「주택도시기금법」 및 하위법령 시행 : '15. 7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	19,510	270,832	899,96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금융기관 예치
- 사업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 수 입

(1)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2,262	2,890	2,890	3,065	3,065	175	6.1

가.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2

제39조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13조(분담금의 관리) ② 보장사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한 날 및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된 보상금·이자·수수료, 구상금 환입액·이자·수수료 및 제24조에 따라 기준월에 지출된 비용의 내용을 보장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이자계산은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기준월 말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CD금리를 적용하되, 이자계산 기간은 보상금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구상금의 경우 구상금이 환입된 날의 다음날부터 각각 제14조에 따른 정산일까지로 한다.

나. 수입 개요

- 책임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징수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이 '17년도 기금으로 편입되면서 누적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주간운용사에 위탁하는 등 자산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 ('78년~) 2.17% → ('99년~) 4.4% → ('06년~) 3.4% → ('09년~) 1.0%

- 보장사업자가 가해자로부터 구상하여 손해보상금이 환입된 날과 기금관리자에게 납부한 날의 기간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장 수 결 장 액 (B)	수 납 액 (C)	수 납 률 (C/A)	수 납 률 (C/B)	미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당 초	수 정 (A)							
'20	-	3,521	3,521	320	320	9.1	100.0	-	-
'21	1,001	4,227	4,227	818	818	19.4	100.0	-	-
'22	2,411	2,411	2,411	2,262	2,262	93.8	100.0	-	-
'23.12	2,890	2,890	2,890	1,070	1,070	37.0	100.0	-	-

(2) 법정부담금	
59 - 59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법정부담금	33,625	34,790	34,790	34,790	34,790	-	-

가.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제37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

나. 수입 개요

- 책임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 또는 책임공제 금액의 일정비율(1%)을 징수
- 보험회사 등이 책임보험가입자로부터 책임보험료에 분담금율을 곱한 금액을 책임 보험료와 함께 수납 후 익월말일에 기금관리자에게 납부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33,283	33,283	33,283	33,739	33,739	101.4	100.0	-	-
'21	34,249	34,249	34,249	34,435	34,435	100.5	100.0	-	-
'22	34,717	34,717	34,717	33,625	33,625	96.9	100.0	-	-
'23.12	34,790	34,790	34,790	32,143	32,143	92.4	100.0	-	-

(3)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20,582	17,910	17,910	20,574	20,574	2,664	14.9

가.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39조 (청구권 등의 대위) ①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할 수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13조(분담금의 관리) ④ 보장사업자는 구상금 환입액등(수수료는 제외한다)을 구상금이 환입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해당금액을 분담금관리자에게 납입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1조 (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자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수입 개요

- (손해보상환입금) 정부보장사업으로 무보험·뺑소니·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여 회수한 금액
- (위탁사업비 반납) 민간위탁 사업비의 결산 후 전년도 잔액 반납금액
- (생활자금대출회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유자녀에게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금으로 융자된 자금의 회수
 -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 되는 달까지 매월 20만원 지급한 대출금을 자녀가 30세가 되는 달부터 최대 20년 분할(월/분기/반기/년) 상환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12,308	15,194	15,194	14,870	14,870	97.9	100.0	-	-
'21	10,919	15,091	15,091	338,636	15,513	102.8	4.6	293,637	14,514
'22	16,885	16,885	16,885	314,259	20,582	121.9	6.5	274,576	19,101
'23.12	17,910	17,910	17,910	306,908	24,650	137.6	8.0	268,346	13,912

(4) 기금예탁원금회수	
92 - 923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예탁원금 회수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가.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제6조 (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수입 개요

- 기금의 여유자금을 정부의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 등에 사용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후 회수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장 수 결 장 액 (B)	수 납 액 (C)	수 납 율 (C/A)	수 납 율 (C/B)	미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당 초	수 정 (A)							
'20	-	-	-	-	-	-	-	-	-
'21	-	-	-	-	-	-	-	-	-
'22	-	-	-	-	-	-	-	-	-
'23.12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	100.0	-	-

(5) 기금예탁이자수입

95 - 95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예탁이자 수입	1,016	2,200	2,200	5,361	5,361	3,161	143.7

가.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에 따른 상환 요청에 따라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수입 개요

- 기금의 여유자금을 정부의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 등에 사용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	-	-	-	-	-	-	-	-
'21	-	-	-	-	-	-	-	-	-
'22	1,200	1,200	1,200	1,016	1,016	84.7	100.0	-	-
'23.12	2,200	2,200	2,200	3,185	3,185	144.8	100.0	-	-

(6)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2,271	104,832	104,832	3,357	3,357	△101,475	△96.8

가.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2

제39조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나. 수입 개요

-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책임 보험료의 1%를 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 사업비로 사용 후 누적된 여유자금 중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181,574	181,574	181,574	207,711	207,711	114.4	100.0	-	-
'21	207,110	207,110	207,110	204,081	204,081	98.5	100.0	-	-
'22	38,376	38,376	38,376	2,271	2,271	5.9	100.0	-	-
'23.12	104,432	104,832	104,832	100,932	100,932	96.3	100.0	-	-

(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200,892	-	-	98,240	98,240	98,240	순증

가.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2

제39조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나. 수입 개요

-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책임 보험료의 1%를 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 사업비로 사용 후 누적된 여유자금 중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	-	-	-	-	-	-	-	-	-
'21	-	-	-	-	-	-	-	-	-
'22	170,578	170,578	170,578	200,892	200,892	117.8	100.0	-	-
'23.12	-	-	-	-	-	-	-	-	-

3. 지 출

사 업 명						
(1) 의무보험전산망 (464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국		교통 및 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41	300
명칭	자동차및교통정책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의무보험전산망

□ 사업 성격 (공동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의무보험 전산망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모빌리티 자동차국	신영우	이 향	박초롱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	044-201-4760	044-201-4761	044-201-4870
	사업시행주체	보험개발원	정보서비스1팀	박철 팀장	02-368-4059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이전	2,432	2,322	2,322	2,241	2,241	△81	△3.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 말)								2024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의무보험전산망	2,432	2,432	2,432 [2,407]	-	-	2,322	2,322	2,322	2,322 [2,238]	2,322	2,322 [2,238]	-	-	2,241
· 유지보수비	864	864	864 [855]	-	-	710	710	710	710 [687]	710	710 [687]	-	-	794
· 운영관리비	1,568	1,568	1,568 [1,552]	-	-	1,612	1,612	1,612	1,612 [1,551]	1,612	1,612 [1,551]	-	-	1,447
○ 비목별분류(합계)	2,432	2,432	2,432 [2,407]	-	-	2,322	2,322	2,322	2,322 [2,238]	2,322	2,322 [2,238]	-	-	2,241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432	2,432	2,432 [2,407]	-	-	2,322	2,322	2,322	2,322 [2,238]	2,322	2,322 [2,238]	-	-	2,24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32	2,432	2,432 [2,407]	-	-	2,322	2,322	2,322	2,322 [2,238]	2,322	2,322 [2,238]	-	-	2,241
· 유지보수비	864	864	864 [855]	-	-	710	710	710	710 [687]	710	710 [687]	-	-	794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864	864	864 [855]	-	-	710	710	710	710 [687]	710	710 [687]	-	-	794
· 운영관리비	1,568	1,568	1,568 [1,552]	-	-	1,612	1,612	1,612	1,612 [1,551]	1,612	1,612 [1,551]	-	-	1,447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568	1,568	1,568 [1,552]	-	-	1,612	1,612	1,612	1,612 [1,551]	1,612	1,612 [1,551]	-	-	1,44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을 통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행안부, 경찰청 등)에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 및 무보험 운행정보 등을 제공하여 사회질서 유지 및 대국민 편의성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및 제45조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63.04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책임보험가입(국가 및 지자체 등 자가보장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는 의무가입 제외)
- '84.12 모든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의무화(자가보장제도 폐지)
 - '02.02 자동차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구축
 - '03.08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구성·운영 근거 신설(보험개발원 위탁)
 - '04.12 전산망을 이용한 무보험운행자 정보 제공
 - '05.02 대물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11.11 50CC미만 이륜자동차 가입 의무화
 - '15.02 건설기계 3종(트럭지게차,도로보수트럭,자주식노면측정장비) 가입 의무화
 - '17.01 분담금검증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1 행안부 차량대피신속알림 시스템 연계(차량침수 피해 예방 지원)
 - '20.0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시스템 연계(보장사업 지원)
 - '20.05 서울시 번호판영치 시스템 연계(무보험차량 영치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2~현재(1년 단위로 사업수행)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437	2,322	2,432	2,322	2,24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험개발원
- 사업 수혜자 : 지자체 · 특사경 · 등록담당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자동차검사소, 자동차보유자, 보장사업자, 보험사

사 업 명
(2) 피해자지원 (464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41	301
명칭	자동차및교통정책	자동차사고피해지원	피해자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피해자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모빌리티 자동차국	신영우	김동규	-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	044-201-4760	044-201-4861	-
	사업시행주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복지처	황현주 처장	-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이전	22,623	22,574	22,574	21,775	21,775	△779	△3.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2024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이월액	제외 계 획 현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733	22,623	22,623 [20,308]	-	-	22,574	22,574	22,574	22,574 [19,701]	22,574	22,574 [19,701]	-	-	21,775
· 경제적지원	18,461	18,038	18,038 [16,211]	-	-	18,302	18,302	18,302	18,302 [15,798]	18,302	18,302 [15,798]	-	-	17,503
· 정서적지원	939	939	939 [893]	-	-	939	939	939	939 [827]	939	939 [827]	-	-	939
· 홍보비	189	219	219 [218]	-	-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	-	189
· 관리운영비	2,864	3,147	3,147 [2,710]	-	-	2,864	2,864	2,864	2,864 [2,628]	2,864	2,864 [2,628]	-	-	2,864
· 피해예방사업	280	280	280 [276]	-	-	280	280	280	280 [258]	280	280 [258]	-	-	280
○ 비목별 분류(합계)	22,623	22,623	22,623 [20,308]	-	-	22,574	22,574	22,574	22,574 [19,701]	22,574	22,574 [19,701]	-	-	21,775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2,623	22,623	22,623 [20,308]	-	-	22,574	22,574	22,574	22,574 [19,701]	22,574	22,574 [19,701]	-	-	21,77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2,623	22,623	22,623 [20,308]	-	-	22,574	22,574	22,574	22,574 [19,701]	22,574	22,574 [19,701]	-	-	21,775
· 경제적지원	18,038	18,038	18,038 [16,211]	-	-	18,302	18,302	18,302	18,302 [15,798]	18,302	18,302 [15,798]	-	-	17,503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8,038	18,038	18,038 [16,211]	-	-	18,302	18,302	18,302	18,302 [15,798]	18,302	18,302 [15,798]	-	-	17,503
· 정서적지원	939	939	939 [893]	-	-	939	939	939	939 [827]	939	939 [827]	-	-	939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939	939	939 [893]	-	-	939	939	939	939 [827]	939	939 [827]	-	-	939
· 홍보비	219	219	219 [218]	-	-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	-	189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19	219	219 [218]	-	-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	-	189
· 관리운영비	3,147	3,147	3,147 [2,710]	-	-	2,864	2,864	2,864	2,864 [2,628]	2,864	2,864 [2,628]	-	-	2,864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147	3,147	3,147 [2,710]	-	-	2,864	2,864	2,864	2,864 [2,628]	2,864	2,864 [2,628]	-	-	2,864
· 피해예방사업	280	280	280 [276]	-	-	280	280	280	280 [258]	280	280 [258]	-	-	28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80	280	280 [276]	-	-	280	280	280	280 [258]	280	280 [258]	-	-	2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자동차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재활을 돕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경제적지원) 자동차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및 그 가족(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조하고 원활한 재활을 지원
- (정서적지원) 심리안정 서비스 등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수혜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유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지원
- (지원사업홍보)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및 신규 지원자 발굴
- (관리운영비) 피해자 지원사업 사업경비(인건비·복리후생비·경비)
- (피해예방사업) 자동차사고 피해보상 등 사후적 조치에서 피해예방 등의 선제적 조치로 전환하여 국민안전 강화 및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등 시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2.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 ② 추진경위 : '9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 공포(법률 제5793호)

'99.9 자동차사고 유자녀등 지원업무 규정 제정(건설교통부 예규 제10호)

'00.1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개시

'21.1 재활·피부양 보조금(20→22만원), 자립지원금(6→7만원) 인상

'23.1 장학금(30→35만원) 인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1년 단위로 사업수행)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1,170	22,090	22,623	22,574	21,775

- 피해자지원 수혜 인원 규모
 - 경제적 지원 : ('20년) 9,073명, ('21년) 8,415명, ('22년) 7,947명
 - 정서적 지원 : ('20년) 798명, ('21년) 552명, ('22년) 552명
 - 총 지원인원 : ('20년) 9,871명, ('21년) 8,967명, ('22년) 8,499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업 수혜자 : 자동차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3) 정부보장사업 (464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41	302
명칭	자동차및교통정책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정부보장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정부보장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모빌리티 자동차국	신영우	이 향	박초롱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	044-201-4760	044-201-4761	044-201-4870
	사업시행주체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정부보장사업부	최재진 부장	02-6103-9223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이전	20,209	20,709	20,709	20,596	20,596	△113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 말)								2024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209	20,209	20,209 [16,957]	-	-	20,709	20,709	20,709	20,709 [18,045]	20,709	20,709 [18,045]	-	-	20,596
· 무보험 · 뺑소니보상	15,908	15,908	15,908 [14,159]	-	-	17,702	17,702	17,702	17,702 [15,088]	17,702	17,702 [15,088]	-	-	17,089
· 미반환가불금	2,800	2,800	2,800 [1,634]	-	-	1,500	1,500	1,500	1,500 [1,471]	1,500	1,500 [1,471]	-	-	2,000
· 관리운영비	1,501	1,501	1,501 [1,164]	-	-	1,507	1,507	1,507	1,507 [1,486]	1,507	1,507 [1,486]	-	-	1,507
○ 비목별 분류(합계)	20,209	20,209	20,209 [16,957]	-	-	20,709	20,709	20,709	20,709 [18,045]	20,709	20,709 [18,045]	-	-	20,596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0,209	20,209	20,209 [16,957]	-	-	20,709	20,709	20,709	20,709 [18,045]	20,709	20,709 [18,045]	-	-	20,59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209	20,209	20,209 [16,957]	-	-	20,709	20,709	20,709	20,709 [18,045]	20,709	20,709 [18,045]	-	-	20,596
· 무보험 · 뺑소니보상	15,908	15,908	15,908 [14,159]	-	-	17,702	17,702	17,702	17,702 [15,088]	17,702	17,702 [15,088]	-	-	17,089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5,908	15,908	15,908 [14,159]	-	-	17,702	17,702	17,702	17,702 [15,088]	17,702	17,702 [15,088]	-	-	17,089
· 미반환가불금	2,800	2,800	2,800 [1,634]	-	-	1,500	1,500	1,500	1,500 [1,471]	1,500	1,500 [1,471]	-	-	2,000
- 민간위탁 사업비(320-02)	2,800	2,800	2,800 [1,634]	-	-	1,500	1,500	1,500	1,500 [1,471]	1,500	1,500 [1,471]	-	-	2,000
· 관리운영비	1,501	1,501	1,501 [1,164]	-	-	1,507	1,507	1,507	1,507 [1,486]	1,507	1,507 [1,486]	-	-	1,507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501	1,501	1,501 [1,164]	-	-	1,507	1,507	1,507	1,507 [1,486]	1,507	1,507 [1,486]	-	-	1,5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무보험·뺑소니·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정부보장사업 시행으로 불법차량에 의한 국민안전 보장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21. 7. 27.>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 추진경위

- '78. 4 : 뺑소니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 시행
- '85. 7 :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추가
- '02. 8 : 보장사업업무 위탁사업자 확대 지정(1개사→8개사), 분담금관리자로 협회 지정
- '05. 7 :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시행(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 협회 지정)
- '09. 2 : 미반환가불금 보상비율 상향(70%→ 100%)
- '09. 8 : 보장사업업무 위탁사업자 확대(8→ 10개사)
- '10. 2 : 채권정리위원회 운영 위탁
- '22. 1 :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추가
- '23. 1 : 보장사업 위탁사업자 단일 지정 (10개 보험회사→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교통사고 피해자 보장사업 선제적 안내를 위한 경찰망 연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8년~현재(1년 단위로 사업수행)
- 사업규모 : 무보험·뺑소니·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보상(부상·후유장애시 최대 1.5억)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무보험·뺑소니·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사 업 명						
(4) 생활지원 및 학자금 (융자) (464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41	303
명칭	자동차및교통정책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생활지원 및 학자금 (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피해자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모빌리티 자동차국	신영우	김동규	-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	044-201-4760	044-201-4861	-
	사업시행주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복지처	황현주 처장	054-459-7300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이전	1,002	1,119	1,119	1,119	1,119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 말)								2024년 예산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2	1,002	1,002 [779]	-	-	1,119	1,119	1,119	1,119 [694]	1,119	1,119 [694]	-	-	1,119
·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1,002	1,002	1,002 [779]	-	-	1,119	1,119	1,119	1,119 [694]	1,119	1,119 [694]	-	-	1,119
○ 비목별 분류(합계)	1,002	1,002	1,002 [779]	-	-	1,119	1,119	1,119	1,119 [694]	1,119	1,119 [694]	-	-	1,119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002	1,002	1,002 [779]	-	-	1,119	1,119	1,119	1,119 [694]	1,119	1,119 [694]	-	-	1,11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02	1,002	1,002 [779]	-	-	1,119	1,119	1,119	1,119 [694]	1,119	1,119 [694]	-	-	1,119
·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1,002	1,002	1,002 [779]	-	-	1,119	1,119	1,119	1,119 [694]	1,119	1,119 [694]	-	-	1,119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002	1,002	1,002 [779]	-	-	1,119	1,119	1,119	1,119 [694]	1,119	1,119 [694]	-	-	1,11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
- (내용) 최대 월 25만원 한도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주며,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2.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② 추진경위 : '00부터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사망자 가정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22.1.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금액 인상(월 20만원→ 25만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1년 단위로 사업수행)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108	1,074	1,002	1,119	1,119

-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대상자 인원 : ('20년) 549명, ('21년) 421명, ('22년) 352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업 수혜자 : 자동차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서, 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5) 국립교통재활병원 (464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41	304
명칭	자동차 및 교통정책	자동차사고피해지원	국립교통재활병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교통 재활병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영우	김동규	-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	044-201-4760	044-201-4861	-
	사업시행주체	(위탁수행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기획예산팀	김인령 과장	031-580-5452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이전	12,320	12,790	12,790	12,086	12,086	△704	△5.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 말)								2024 계화안
	계화액 (수정)	계 화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화액		계 화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 월 예상액	불 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화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320	12,320	12,320 [10,354]	-	-	12,790	12,790	12,790	12,790 [11,129]	12,790	12,790 [11,129]	-	-	12,086
· 운영	3,970	3,970	3,970 [3,880]	-	-	3,395	5,625	5,625	5,625 [5,625]	3,395	5,625 [5,625]	-	-	3,395
· 시설장비	7,350	7,350	7,350 [5,479]	-	-	8,395	6,165	6,165	6,165 [4,531]	8,395	6,165 [4,531]	-	-	7,691
· 재활연구	1,000	1,000	1,000 [995]	-	-	1,000	1,000	1,000	1,000 [973]	1,000	1,000 [973]	-	-	1,000
○ 비목별 분류(합계)	12,320	12,320	12,320 [10,354]	-	-	12,790	12,790	12,790	12,790 [11,129]	12,790	12,790 [11,129]	-	-	12,086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2,320	12,320	12,320 [10,354]	-	-	12,790	12,790	12,790	12,790 [11,129]	12,790	12,790 [11,129]	-	-	12,08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320	12,320	12,320 [10,354]	-	-	12,790	12,790	12,790	12,790 [11,129]	12,790	12,790 [11,129]	-	-	12,086
· 운영교부금	3,970	3,970	3,970 [3,880]	-	-	3,395	5,625	5,625	5,625 [5,625]	3,395	5,625 [5,625]	-	-	3,395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970	3,970	3,970 [3,880]	-	-	3,395	5,625	5,625	5,625 [5,625]	3,395	5,625 [5,625]	-	-	3,395
· 시설장비	7,350	7,350	7,350 [5,479]	-	-	8,395	6,165	6,165	6,165 [4,531]	8,395	6,165 [4,531]	-	-	7,691
-민간위탁사업비 (320-02)	7,350	7,350	7,350 [5,479]	-	-	8,395	6,165	6,165	6,165 [4,631]	8,395	6,165 [4,631]	-	-	7,691
· 재활연구	1,000	1,000	1,000 [995]	-	-	1,000	1,000	1,000	1,000 [973]	1,000	1,000 [973]	-	-	1,00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000	1,000	1,000 [995]	-	-	1,000	1,000	1,000	1,000 [973]	1,000	1,000 [973]	-	-	1,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아급성기 교통사고환자들이 재활전문병원에서 집중 전문재활치료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교부금) 안정적인 병원운영을 위한 수탁병원 파견인력 지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
- (시설장비) 안정적인 병원운영을 위한 장비·비품구매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수선,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시설장비 구축(주간재활관 건립 등)
- (재활연구) 자동차사고 재활의료 정책 및 임상 연구사업 확대·발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제1항

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직업재활사업(직업재활상담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추진경위 : '14.10월 국립교통재활병원 개원 및 위탁운영 개시

* (1기, '14.10~'19.9) 가톨릭중앙의료원, (2기, '19.10~'24.9) 서울대학교병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10월 ~ 계속(1년 단위로 사업 수행)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8,832	7,883	11,580	12,790	12,08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서울대학교병원 위탁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서울대학교병원('19.10~'24.9)
- 사업 수혜자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및 아급성기의 교통사고 환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 업 명						
(6)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464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41	305
명칭	자동차및교통정책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모빌리티 자동차국	신영우	박경애	장동규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	044-201-4760	044-201-4871	044-201-4873
	사업시행주체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기금관리부	반주영 팀장	02-6103-9204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민간이전	781	781	781	781	781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 말)								2024 계 획
	계 획 액 (수 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81	781	781 [716]	-	-	781	781	781	781 [757]	781	781 [757]	-	-	781
· 공제조합 정책수립 및 감독·검사	232	232	232 [198]	-	-	297	187	187	187 [174]	297	187 [174]	-	-	36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	155	155	155 [128]	-	-	90	200	200	200 [190]	90	200 [190]	-	-	150
· 시스템구축	394	394	394 [390]	-	-	394	394	394	394 [393]	394	394 [393]	-	-	264
○ 비목별 분류(합계)	781	781	781 [716]	-	-	781	781	781	781 [757]	781	781 [757]	-	-	781
· 민간위탁 사업비(320-02)	781	781	781 [716]	-	-	781	781	781	781 [757]	781	781 [757]	-	-	78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81	781	781 [716]	-	-	781	781	781	781 [757]	781	781 [757]	-	-	781
· 공제조합 정책수립 및 감독·검사	232	232	232 [198]	-	-	297	187	187	187 [174]	297	187 [174]	-	-	367
-민간위탁 사업비(320-02)	232	232	232 [198]	-	-	297	187	187	187 [174]	297	187 [174]	-	-	36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	155	155	155 [128]	-	-	90	200	200	200 [190]	90	200 [190]	-	-	150
-민간위탁 사업비(320-02)	155	155	155 [128]	-	-	90	200	200	200 [190]	90	200 [190]	-	-	150
· 시스템구축	394	394	394 [390]	-	-	394	394	394	394 [393]	394	394 [393]	-	-	264
-민간위탁 사업비(320-02)	394	394	394 [390]	-	-	394	394	394	394 [393]	394	394 [393]	-	-	2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본 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3, 제39조의12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0.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

② 추진경위

- '79.6~'97.12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97년까지 5개 공제조합* 허가
 - * 택시('79.6)·화물('81.7)·버스('81.12)·개인택시('93.2)·전세버스('97.12)
- '12.10 렌터카 공제조합을 별도법인으로 인가
- '13.12~'16.1 전문적인 공제조합 지도·감독과 손해배상제도 연구·지원 등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 '17.12~'18.3 운수단체 간담회, 운수단체 연합회장 개별 면담(총15회) 등을 통해 진흥원 추진 설득 및 협의
- '18.9~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858	637	781	781	78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자동차 공제조합, 자동차사고 피해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7) 기금운영비(465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51	306
명칭	자동차및교통정책	기금운영비(자동차기금)	기금운영비(기금운영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금운영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모빌리티 자동차국	신영우	이 향	박초롱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	044-201-4760	044-201-4761	044-201-4870
	사업시행주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기금관리부	반주영 팀장	02-6103-9204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운영비	349	350	350	347	347	△3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 말)								2024 계 획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8	368	349 [349]	-	19	350	350	350	350 [349]	350	350 [349]	-	-	347
· 운영비	366	366	347 [347]	-	19	349	349	349	349 [348]	349	349 [348]	-	-	346
· 업무추진비	2	2	2 [2]	-	19	1	1	1	1 [1]	1	1 [1]	-	-	1
○ 비목별 분류(합계)	368	368	349	-	19	350	350	350	350 [349]	350	350 [349]	-	-	347
· 일반수용비(210-01)	38	38	38 [38]	-	-	27	27	27	27 [27]	27	27 [27]	-	-	18
· 사업추진비(240-01)	2	2	2 [2]	-	-	1	1	1	1 [1]	1	1 [1]	-	-	1
· 민간위탁사업비(320-02)	328	328	309 [309]	-	19	322	322	322	322 [321]	322	322 [321]	-	-	32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68	368	349	-	19	350	350	350	350 [349]	350	350 [349]	-	-	347
· 운영비	366	366	347 [347]	-	19	349	349	349	349 [348]	349	349 [348]	-	-	346
- 일반수용비(210-01)	38	38	38 [38]	-	-	27	27	27	27 [27]	27	27 [27]	-	-	18
- 민간위탁사업비(320-02)	328	328	309 [309]	-	19	322	322	322	322 [321]	322	322 [321]	-	-	328
· 업무추진비	2	2	2 [2]	-	-	1	1	1	1 [1]	1	1 [1]	-	-	1
- 사업추진비(240-01)	2	2	2 [2]	-	-	1	1	1	1 [1]	1	1 [1]	-	-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사업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비용 및 위원회 운영 비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2

제39조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4. 분담금의 수납·관리 등 기금의 조성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경비

- ② 추진경위

- '16.3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의 기금 편입 결정
- '16.12. 기금 설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 '17.1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신설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92	93	368	350	347

- 기타: 해당없음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8)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9003-9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000	9003	910
명칭	기금간거래(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 기금(총괄계정) 예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영우	이 향	박초롱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	044-201-4760	044-201-4761	044-201-4870
	사업시행주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기금관리부	반주영 팀장	02-6103-9204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100,000	100,000	100,000	150,000	150,000	50,000	5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 말)								2024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 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000	100,000	100,000	-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15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금	100,000	100,000	100,000	-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150,000
○ 비목별 분류(합계)	100,000	100,000	100,000	-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150,000
· 기금예탁금(480-03)	100,000	100,000	100,000	-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15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정부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제6조 (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해당없음

사 업 명
(9) 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2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통화금융기관 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영우	이 향	박초롱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	044-201-4760	044-201-4761	044-201-4870
	사업시행주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기금관리부	반주영 팀장	02-6103-9204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	100,932	101,977	101,977	3,671	3,671	△98,306	△96.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 말)								2024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액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 획 현 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4,432	104,432	100,932 [100,932]	-	-	101,977	101,977	101,977	101,335 [101,335]	101,977	101,335 [101,335]	-	-	3,671
· 여유자금운용	104,432	104,432	100,932 [100,932]	-	-	101,977	101,977	101,977	101,335 [101,335]	101,977	101,335 [101,335]	-	-	3,671
○ 비목별 분류(합계)	104,432	104,432	100,932 [100,932]	-	-	101,977	101,977	101,977	101,335 [101,335]	101,977	101,335 [101,335]	-	-	3,671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470-02)	104,432	104,432	100,932 [100,932]	-	-	3,357	3,357	3,357	1,519 [1,519]	3,357	1,519 [1,519]	-	-	3,671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470-03)	-	-	-	-	-	98,620	98,620	98,620	99,816 [99,816]	98,620	99,816 [99,816]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하여 누적된 잉여자금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융자사업 등에 운용하고 남은 잉여자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2

제39조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해당없음

사 업 명
(1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자동차사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	120	126
명칭	피해지원기금		자동차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2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통화금융기관 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영우	이 향	박초롱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보험팀)	044-201-4760	044-201-4761	044-201-4870
	사업시행주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기금관리부	반주영	02-6103-9204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 금융기관예치	-	-	-	52,771	52,771	52,771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 말)								2024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획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제외		이월 예산액	불용 예산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52,771
· 여유자금 운용	-	-	-	-	-	-	-	-	-	-	-	-	-	52,771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52,771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470-03)	-	-	-	-	-	-	-	-	-	-	-	-	-	52,7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하여 누적된 잉여자금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융자사업 등에 운용하고 남은 잉여자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2

제39조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해당없음